

#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298
----------	------

2024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4.11. 1

2.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4.11. 4

4. 상정일자 :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4.12. 2)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24.12. 3)

-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2024.12.13)

- 수정안 가결

## Ⅱ.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또는 개별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서울시는 총 20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 2025년도 기금운용규모는 금년 대비  $\Delta 3,697$ 억원( $\Delta 7.7\%$ ) 감소한 총 4조 4,142억원으로 기금간 내부거래, 예치금 등 재무활동비는 3조 7,454억원이고 실집행 사업비는 6,688억원입니다.

〈표 2-1〉 2025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안

(단위 : 억원)

기금명	기금운용계획			주요사업
	2025	2024	증감	
합계	44,142	47,839	△3,69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518	27,269	△5,751	◦ 회계기금 간 예수예탁을 통한 여유 재원의 효율적 활용, 市 채무상환
중소기업육성기금	4,202	4,851	△649	◦ 소상공인사회적기업 직접용자 및 Vision2030펀드 조성
식품진흥기금	182	186	△4	◦ 식품위생시설 개선자금 용자, 교육홍보
기후대응기금	501	715	△213	◦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 등 사업추진
도로굴착복구기금	639	637	2	◦ 도로굴착 복구 및 사후관리
양성평등가족기금	21	19	2	◦ 양성평등 촉진 사업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437	426	11	◦ 양천·강남·노원·마포 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 지원
사회복지기금	349	446	△97	◦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
체육진흥기금	143	134	9	◦ 생활전문체육 육성, 야구장 시설 개보수
재난관리기금	13,519	10,104	3,415	◦ 재난예방, 응급복구,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336	313	23	◦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 증진
지역교류협력기금	29	28	1	◦ 타 지자체와의 우호 협력 사업추진 및 재해구호 지원
국제개발협력기금	63	66	△3	◦ 해외도시와의 우호 협력 사업추진
도시재생기금	687	1,177	△491	◦ 도시재생 기반시설 조성
관광진흥기금	28	29	△1	◦ 관광업계 자생력 제고
공무원주거안정기금	285	250	35	◦ 市 무주택 공무원 주택 전세자금 지원
하수도사업회전기금	945	760	185	◦ 하수도사업의 중장기 투자재원 안정적 적립
고향사랑기금	10	2	8	◦ 고향사랑기부금 적립 및 주민 복리증진 사업추진
공공시설등설치기금	237	406	△169	◦ 공공시설 설치 사업추진
박물관미술관소장품구입기금	11	21	△10	◦ 서울시 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 구입

# Ⅲ.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1) 기금 개요

-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sup>1)</sup>와 「재해구호법」<sup>2)</sup>,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sup>3)</sup>등의 법령이나 서울시의 개별 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하여 법정적립금·전입금·차입금·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을 수입원으로 특정분야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sup>4)</sup>
- '25년도에 서울시가 운용계획한 20개 기금 28계정의 규모는 4조 4,142억 4,500만원으로 '24년도(4조 7,839억 4,200만원)보다 △7.7%, △3,696억 9,600만원 감소한 것임

#### 1)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2) 「재해구호법」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후략)

#### 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표 3-1〉 기금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계 획 안)	2024년도 <sup>주1)</sup>	증 감 액	증 감 륜
총 운 용 규 모		4,414,245	4,783,942	△369,696	△7.7%
	기 금 사 업 (용 자 사 업 포 함)	668,359	768,064	△99,705	△13.0%
	재 무 활 동 (예탁,예치,예수금상환 등)	3,745,426	4,015,430	△270,003	△6.7%
	행 정 운 영 경 비	458	446	12	2.8%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13602 ('24.11.19)

주1) 당초계획 기준,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함(이하 동일)

- 서울시의 '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sup>5)</sup>을 통해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은 **국제개발협력기금**으로 변경하고,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교류협력기금**으로 신설<sup>6)</sup>함에 따라 금년도보다 1개 기금이 증가한 20개 기금, 28개 계정을 운용하고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것임

5)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① 의안번호 : 1901, ② 제출 : '24. 5.27, ③ 의결 : '24. 6.28 (가결)

※ 주요내용

① 조례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 (기존)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변경)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기금명 변경

② 대외협력기금 국내·국제협력계정 분리로 인한 기금 명칭 변경

- (기존)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 (변경) 국제개발협력기금

③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신규 조례 신설로 인해 기존 대외협력기금 조례에서 국내협력계정 내용 삭제

6)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① 의안번호 : 1906, ② 제출 : '24. 5.27, ③ 의결 : '24. 6.28 (가결)

〈표 3-2A〉 기금현황 (20개 기금, 28개 계정)

연번	기금명	설치	존속기한	설치근거	설치목적	소관부서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992	'25.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회계 및 기금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001	'25.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채무규모를 감축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3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1965	'27.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소재 중소기업에 장기저리 융자지원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4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2018	'27.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소재 중소기업에 투자지원	경제실 창업정책과
5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2012	'27.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원 마련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
6	식품진흥기금	1989	영구	·식품위생법 제89조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식품의 위생을 강화하고,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7	기후대응기금	2007	'27.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등의 촉진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8	도로굴착복구기금	1989	'27.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9	양성평등가족기금	1996	'27.12.31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10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	1996	영구	·지방자치법 제159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기여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

〈표 3-2B〉 기금현황 (20개 기금, 28개 계정)

연번	기금명	설치	존속기한	설치근거	설치목적	소관부서
11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999	'27.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의 사회 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복지실 어르신복지과
12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1999	'27.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장애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등 지원	복지실 장애인복지과
13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1999	영구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 시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	복지실 자활지원과
14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002	'27.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주택실 주택정책과
15	체육진흥기금	2000	'27.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체육진흥 사업과 활동의 안정적 지원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16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003	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재난의 사전예방과 발생시 신속한 복구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
17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003	영구	·재해구호법 제14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자연재해 발생시 응급구호를 행함으로써 재해의 복구, 이재민의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	복지실 복지정책과
18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2004	'27.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행정국 평화기반조성과
19	지역교류협력기금	2007	'28.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행정국 대외협력과
20	국제개발협력기금	2005	'28.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글로벌도시정책관 국제협력담당관

〈표 3-2C〉 기금현황 (20개 기금, 28개 계정)

연번	기금명	설치	존속기한	설치근거	설치목적	소관부서
21	도시재생기금	2017	'26.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22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진흥기금 지원계정	2020	'29.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위기시 관광업계 지원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23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진흥기금 플라자계정	2020	'29.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서울관광플라자 건물 개관을 위한 비용 적립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24	공무원주거안정기금	2021	'25.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소속 공무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재원 확보	행정국 인력개발과
25	하수도사업회전기금	2021	'25.12.31	·지방공기업법 제39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의 적립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26	고향사랑기금	2023	영구	·지방자치법 제159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모금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운용과 고향사랑기금을 통한 주민 복리증진 사업 추진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27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2025	'29.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용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28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	2025	'27.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립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재원의 안정적 확보	문화본부 박물관과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p.3~5



## (2) 기금의 존속기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sup>7)</sup>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금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는 경우,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 20개 기금 28개 계정중 '24년도말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한 계정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나,
  - '25년도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공무원주거안정기금, 하수도사업회전기금**에 대한 존속기한이 종료되어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계연도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3A〉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계정명	존속기한	존속기한이 명시된 법령 및 조례 규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5. 12. 31.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025. 12. 31.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2027. 12. 3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 2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2027. 12. 3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 2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2027. 12. 3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 2

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표 3-3B〉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계정명	존속기한	존속기한이 명시된 법령 및 조례 규정
식품진흥기금	해당없음	식품위생법 제89조
기후대응기금	2027. 12. 31.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도로굴착복구기금	2027. 12. 31.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제2조의2
양성평등 가족 기금	2027. 12. 31.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0조의 2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해당없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2027. 12. 3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3조의2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2027. 12. 3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3조의2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해당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027. 12. 3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3조의2
체육진흥기금	2027. 12. 31.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해당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해당없음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항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2027. 12. 31.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2
지역교류협력기금	2028. 12. 31.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국제개발협력기금	2028. 12. 31.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도시재생기금	2026. 12. 31.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기금지원계정	2029. 12. 31.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관광진흥기금 서울플라자계정	2029. 12. 31.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표 3-3C〉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계정명	존속기한	존속기한이 명시된 법령 및 조례 규정
공무원주거안정기금	2025. 12. 31.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
하수도사업회전기금	2025. 12. 31.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고향사랑기금	해당없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2029. 12. 31.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제4조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	2027. 12. 31.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13602 ('24.11.19)
- ②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서(안)」, p.15 “예산총괄표”

### (3) 기금조성규모

□ 20개 기금 28개 계정의 '25년도말 조성액은 8조 6,991억 9,300만원으로 계획된 바, '24년도말 조성액(7조 8,903억 4,100만원)보다 10.2%, 8,088억 5,2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표 3-4〉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수입	지출			
합 계	7,890,341	2,625,213	1,816,361	8,699,193	808,852	10.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581,382	1,484,921	779,410	7,286,894	705,512	10.7
통합계정	5,488,084	1,446,353	232,161	6,702,275	1,214,191	22.1
재정안정화계정	1,093,298	38,568	547,249	584,618	△508,680	△46.5
중소기업육성기금	187,991	262,230	378,525	71,697	△116,294	△61.8
융자계정	85,880	208,539	290,126	4,293	△81,587	△95
투자계정	44,859	40,332	76,237	8,954	△35,905	△80
사회적경제계정	57,251	13,359	12,161	58,449	1,198	2
식품진흥기금	51,258	8,972	3,308	56,922	5,664	11
기후대응기금	41,579	12,567	31,485	22,660	△18,919	△45.5
도로굴착복구기금	21,976	41,925	37,581	26,320	4,344	19.7
양성평등가족기금	24,176	1,111	1,130	24,158	△18	△0.07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2,678	33,037	35,060	10,655	△2,023	△15.9
사회복지기금	52,212	11,010	23,048	40,175	△12,037	△23
노인복지계정	11,996	520	464	12,051	55	0.4
장애인복지계정	17,767	2,235	7,415	12,587	△5,180	△29.1
자활계정	9,086	583	887	8,782	△304	△3.3
주거지원계정	13,362	7,671	14,281	6,753	△6,609	△49.4
체육진흥기금	56,887	9,725	12,192	54,419	△2,468	△4.3
재난관리기금	682,587	669,344	480,879	871,052	188,465	27.6
재난계정	559,491	610,723	474,710	695,505	136,014	24.3
구호계정	123,096	58,620	6,169	175,547	52,451	42.6
남북교류협력및통일반조성금	32,279	1,284	1,937	31,627	△652	△2
지역교류협력기금	1,162	1,710	2,139	734	△428	△36.8
국제개발협력기금	1,472	4,780	4,743	1,509	37	2.5
도시재생기금	37,413	31,279	1,106	67,586	30,173	80.6
관광진흥기금	7,469	297	645	7,122	△347	△4.6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1,794	68	645	1,218	△576	△32.1
서울관광플라자계정	5,674	229	-	5,903	229	4
공무원주거안정기금	5,630	22,871	22,007	6,494	864	15
하수도사업회전기금	91,532	3,000	-	94,532	3,000	3.2
고향사랑기금	598	381	152	827	229	38.2
공공시설등설치기금	-	23,740	-	23,740	23,740	-
박물관미술관소장품구입기금	51	1,020	1,008	63	12	23.5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13602 ('24.11.19)

#### (4) 기금운용계획

- '25년도에 운용계획하는 20개 기금은 총 4조 4,142억 4,5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24년도 당초 운용계획(4조 7,839억 4,200만원)보다  $\Delta 7.7\%$ , 3,696억 9,600만원 감소한 것임
- '25년도 기금 운용규모가 많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하수도사업회전기금, 도시재생기금**으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은 '24년도(2조 9,713억 8,200만원)보다  $\Delta 27.5\%$ ,  $\Delta 8,195$ 억 5,700만원 감소한 2조 1,518억 2,6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구호계정)은 '24년도 운용규모(1조 1,953억 7,300만원)보다 13.1%, 1,565억 5,800만원 증가한 1조 3,519억 3,2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 투자계정, 사회적경제계정)은 '24년도(5,613억 9,900만원)보다  $\Delta 25.1\%$ ,  $\Delta 1,411$ 억 7,700만원 감소한 4,202억 2,2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 **하수도사업회전기금**은 '24년도(915억 3,200만원)보다 3.3%, 30억원 증가한 945억 3,2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 **도시재생기금**은 '24년도(1,258억 7,500만원)보다  $\Delta 45.4\%$ ,  $\Delta 571$ 억 8,200만원 감소한 686억 9,2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표 3-5〉 기금운용계획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2025년도(안)	2024년도 <sup>주1)</sup>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414,245	5,294,606	△880,361	△16.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51,826	2,971,382	△819,557	△27.5
통합계정	1,604,359	1,514,787	89,571	5.9
재정안정화계정	547,467	1,456,595	△909,128	△62.4
중소기업육성기금	420,222	561,399	△141,177	△25.1
용자계정	294,420	392,188	△97,768	△24.9
투자계정	85,192	126,542	△41,350	△32.7
사회적경제계정	40,610	42,669	△2,058	△4.8
식품진흥기금	18,231	20,558	△2,327	△11.3
기후대응기금	50,146	78,691	△28,544	△36.3
도로굴착복구기금	63,901	67,247	△3,346	△5
양성평등가족기금	2,088	2,056	31	1.5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43,715	43,385	330	0.8
사회복지기금	34,911	47,383	△12,471	△26.3
노인복지계정	1,026	1,155	△129	△11.2
장애인복지계정	7,602	10,787	△3,184	△29.5
자활계정	5,249	5,929	△680	△11.5
주거지원계정	21,034	29,512	△8,478	△28.7
체육진흥기금	14,290	15,786	△1,495	△9.5
재난관리기금	1,351,932	1,195,373	156,558	13.1
재난계정	1,170,215	996,158	174,056	17.5
구호계정	181,717	199,215	△17,498	△8.8
남북교류협력및평화통일반조성기금	33,564	34,409	△845	△2.5
지역교류협력기금	2,873	3,223	△349	△10.9
국제개발협력기금	6,252	6,989	△736	△10.5
도시재생기금	68,692	125,875	△57,182	△45.4
관광진흥기금	2,766	2,978	212	△7.1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1,863	2,304	△441	△19.2
서울관광플라자계정	903	674	229	34
공무원주거안정기금	28,501	23,637	4,864	20.6
하수도사업회전기금	94,532	91,532	3,000	3.3
고향사랑기금	979	638	341	53.6
공공시설등설치기금	23,740	-	23,740	-
박물관미술관소장품구입기금	1,071	2,051	△979	△47.8

주1) 수입계획 (최종)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5년도 기금운용규모(4조 4,142억 4,500만원)가 '24년도 기금운용규모(5조 2,946억 600만원)보다 감액편성(△16.6%, △8,803억 6,100만원)된 것은 용자금 회수 등 기금수입이 감소된 영향도 있으나, 당해연도말까지 해당 기금별 예치금 규모를 실제 예치금 적립액으로 현행화하지 않아 '25년도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로 연동시키지 못한 결과도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기금별로 예치금에 대한 '24년도 예치금 지출계획액과 예치금 실제 적립액을 검토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지출계획액 대비 26.0%, 1,114억 700만원),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지출계획액 대비 19.6%, 1101억 1,200만원), **도시재생기금**(지출계획액 대비 234.1%, 875억 9,2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지출계획액 대비 56.9%, 488억 8,700만원) 등은 '24회계연도 기금 결산시 예치금 초과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지출계획액 대비 △39.8%, △573억 2,600만원), **공무원주거안정기금**(지출계획액 대비 △31.1%, △17억 5,000만원),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지출계획액 대비 △9.4%, △10억 400만원), **고향사랑기금**(지출계획액 대비 △42.2%, △2억 5,300만원) 등은 예치금에 대한 지출계획액보다 실제 적립액이 적어 '24회계연도 결산시 예치금 회수 수입에서 대규모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연도말 예치금 예상잔액(실제 통장잔고)을 당해연도 예치금 지출계획에 반영하여 실제 통장잔고와 연동한 이후 '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 수입액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당초 계획한 예치금 지출계획액을 '25년도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에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판단되는 바,

-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편성기준」 8)과 서울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기준」 9)및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의 경우에도10) 다음년도 수입계획의 예치금회수는 직전연도말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잔액 즉, 실제 규모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실제가 아닌 계획액을 고집한 결과로 판단됨
  - 기금의 수입계획에 실제 규모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기금의 계획과 실제 여유재원 규모가 달라 기금 재원의 운용을 저해하고, 결산시 예치금 회수수입이 과다하거나 과소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기금사업의 경우에도 일반회계의 사업예산제도 체계와 일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11) '24년도에는 수입·지출계획 하였으나, '25년도에는 수입·지출계획이 없는 사업은 수입·지출계획에 기재하지 않고 있어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하는데 제약이 발생될 수 있어 연도별 수입·지출계획이 비교 가능하도록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대한 개선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8)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4. 7), p.287

9) 서울특별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기준」('24. 7), p.234

10)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13820 ('23. 9.20) “기금운용계획 수립 관련 질의회신”

11)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4. 7), p.278



〈표 3-6〉 '24년도 기금별 예치금 지출계획 대비 실제 적립 내역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예치금 지출계획액(A)	예치금 실제 적립액(B)	차액 (B-A)	'25년도 예치금 회수수입
합 계	1,721,662	2,106,372	384,710	1,681,06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44,036	86,710	△57,326	144,036
재정안정화계정	428,899	540,306	111,407	428,899
중소기업육성기금				
유자계정	85,881	134,768	48,887	85,881
투자계정	44,859	75,002	30,143	44,859
사회적경제계정	27,252	38,821	11,569	27,252
식품진흥기금	9,259	20,531	11,272	9,259
기후대응기금	25,579	31,731	6,152	25,579
도로굴착복구기금	21,976	58,051	36,075	21,976
양성평등가족기금	977	1,113	136	977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0,679	9,675	△1,004	10,679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506	770	264	506
장애인복지계정	3,367	7,089	3,722	3,367
자활계정	4,666	4,932	266	4,666
주거지원계정	13,363	21,771	8,408	13,363
체육진흥기금	4,566	5,970	1,404	4,566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559,491	669,603	110,112	559,491
구호계정	123,096	135,439	12,343	123,096
남북교류협력및한동맹반조성기금	32,279	33,028	749	32,279
대외협력기금				
지역교류협력기금	1,163	2,089	926	1,163
국제개발협력기금	1,472	4,843	3,371	1,472
도시재생기금	37,414	125,006	87,592	37,414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1,795	2,103	308	1,795
서울관광플라자계정	674	617	△57	674
공무원주거안정기금	5,630	3,880	△1,750	5,630
하수도사업회전기금	91,533	91,539	6	91,533
고향사랑기금	599	346	△253	599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sup>주1)</sup>	40,600	-	△40,600	-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	51	636	585	51

주1)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① 의안번호 : 2284, ② 제출 : '24.10.16, ③ 회부 : '24.10.18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14157 ('24.11.19) “서울특별시 기금계정별 예치금 현황”

## 2. 기금별 검토

###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법」<sup>12)</sup>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sup>13)</sup> 그리고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sup>14)</sup>에 따라 설치된 기금임
  
- 동 기금은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등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계정**과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여 채무규모를 감축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 운용되고 있음<sup>15)</sup>

---

12)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4)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5)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계정 구분)

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 1) 통합계정

## ① 조성규모

- **통합계정**의 '25년도말 조성액은 6조 7,022억 7,500만원으로 계획한 바, '24년도말 조성액(5조 4,880억 8,400만원)보다 1조 2,141억 9,100만원 증가되는 것으로 제출함

〈표 3-7〉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액	
5,488,084	1,446,353	232,161	1,214,191	6,702,275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② 운용계획

- 동 계정의 '25년도 운용계획은 '24년도(1조 5,147억 8,700만원)보다 895억 7,100만원 증액된 1조 6,043억 5,900만원으로 계획한 것임
-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가 '24년도(922억 9,200만원)보다 517억 4,300만원 증액편성된 1,440억 3,500만원, **예수금수입**이 '24년도(1조 3,432억 1,000만원)보다 252억 2,100만원 증액편성된 1조 3,684억 3,1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였으며, **융자금회수이자수입**의 경우, 금년도(161억 7,100만원)보다 △9억 2,100만원 감액된 152억 4,900만원으로 수입계획한 것임

〈표 3-8〉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1,604,359	1,514,787	89,571	
공 공 예 금 이 자 수 입	3,887	3,392	494	· 공공예금 이자수입
용 자 금 회 수 이 자 수 입	15,249	16,171	△921	· 용자금회수 이자수입
예 치 금 회 수	144,035	92,292	51,743	· 전년도 이월금
예 수 금 수 입	1,368,431	1,343,210	25,221	· 예수금 수입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3,970	13,920	50	·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예 탁 금 이 자 수 입	58,784	45,800	12,983	· 예탁금 이자 수입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지출계획은 **기금 및 회계 용자 지원중 예탁금**을 금년도(1조 2,757억 3,500만원)보다 △8,513억 3,500만원 감액편성된 1조 1,906억원을 지출계획하고, **예수금원리금상환**을 '24년도(950억 900만원)보다 1,371억 4,400만원 증액편성한 2,321억 5,400만원으로 계획하고, **예치금**은 '24년도 운용규모(1,440억 3,500만원)보다 375억 6,100만원 증액편성된 1,815억 9,700만원으로 지출계획한 것임

〈표 3-9〉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예 산 과 목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1,604,359	1,514,787	89,571	
기 금 및 회 계 용 자 지 원				
예 탁 금	1,190,600	1,275,735	△85,135	· 기금 및 회계 용자 지원 1,190,600
예수금원금상환	160,472	33,650	126,822	· 예수금원금상환 160,472
예수금이자상환	71,681	61,359	10,321	· 예수금이자상환 71,681
여 유 자 금 예 치				
일 반 예 치 금	181,597	144,035	37,561	· 여유자금 예치 181,597
기 금 관 리 비				
사 무 관 리 비	7	7	-	· 기금관리비 7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2) 재정안정화계정

### ① 조성규모

- **재정안정화계정**의 '25년도말 조성액은 5,846억 1,800만원으로 계획한 바, '24년도말 조성액(1조 932억 9,800만원)보다 △5,086억 8,000만원 감액되는 것으로 제출함

〈표 3-10〉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액	
1,093,298	38,568	547,249	△508,680	584,618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② 운용계획

- 동 계정의 '25년도 운용계획은 금년도(1조 4,565억 9,500만원)보다 △9,091억 2,800만원 감액편성된 5,474억 6,700만원으로 계획한 것임
- 수입계획의 **예치금회수**를 금년도(1조 999억 9,200만원)보다 △6,710억 9,300만원 감액편성된 4,288억 9,8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08억 6,300만원, **예탁금이자수입**은 277억 500만원을 수입계획한 것으로 확인됨
  - **기타회계전입금**의 경우 금년도에는 3,083억 2,700만원을 수입계획 하였으나, '25년도에는 미편성하여, '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하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회계연도중 전입시킬 것으로 판단됨

〈표 3-11〉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547,467	1,456,595	△909,128	
공공예금이자수입	10,863	18,895	△8,032	· 공공예금이자수입
예치금회수	428,898	1,099,992	△671,093	· 예치금회수
기타회계전입금	-	308,327	△308,327	· 미편성
예탁금원금회수수입	80,000	-	80,000	· 통합계정 예탁금회수
예탁금이자수입	27,705	29,380	△1,674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지출계획의 경우, **여유자금 예치(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중 예치금이 △4,286억 8,000만원 감액되어, **차입금원금상환도** △5,169억 1,000만원 감액되는 등 '24년도 지출계획(1조 4,565억 9,500만원) 보다 △9,091억 2,800만원 감액된 5,474억 6,700만원으로 지출계획한 바,

-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6)는 매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중 50% 이상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24회계연도 결산 이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동 계정의 수입·지출 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판단됨

16)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 잉여금에서 다음 각 목을 공제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표 3-12〉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예 산 과 목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547,467			
여유자금 예치(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예 치 금	218	428,898	△428,680	· 기금 운용 여유자금	218
지 방 채 차 입 금 원 금 상 환					
차입금원금상환	403,570	920,481	△516,910	· 지방채 차입금 원금 상환	403,570
지 방 채 차 입 금 이 자 상 환					
차입금이자상환	143,446	107,023	36,423	·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	143,446
기 금 관 리 비					
사 무 관 리 비	231	193	38	· 모집공채 발행 수수료	231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2) 중소기업육성기금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17),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8)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동 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소재 중소기업에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위한 **융자계정**과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중소기업에 투자지원을 위한 **투자계정**, 복리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의 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경제계정**으로 분리·운용되고 있음

### 1) 융자계정

#### ① 조성규모

- **융자계정**은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관련단체 등에 대한 융자와 시중은행과의 협력을 통한 이차차액 보전 등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운용하고 있음
- **융자계정**의 '25년도말 조성액은 42억 9,300만원으로 '24년도말 조성액 (858억 8,000만원)보다 △815억 8,700만원 감소되는 것으로 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

17)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18)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표 3-13〉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 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액	
85,880	208,539	290,126	△81,587	4,293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② 운용계획

□ 동 계정의 '25년도 운용계획은 '24년도보다 △977억 6,800만원 감소한 2,944억 2,000만원으로 계획한 바,

○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을 '24년도(2,154억 8,000만원)보다 △600억 9,600만원 감액된 1,553억 8,3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고, 예치금회수를 금년도(1,267억 800만원)보다 △408억 2,700만원 감액된 858억 8,000만원으로 수입계획 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은 금년도(400억원)와 동일하게 '25년도 운용계획을 400억원으로 수입계획한 것으로 확인됨

〈표 3-14〉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25	2024	증감액	산출내역
합 계	294,420	392,188	△97,768	
공공예금이자수입	3,789	3,000	789	·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9,366	7,000	2,366	·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55,383	215,480	△60,096	·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회수	85,880	126,708	△40,827	· 2023년도 예치금 회수
기타회계전입금	40,000	40,000	-	· 일반회계 전입금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지출계획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직접 용자하는 **중소기업 직접용자**는 금년도 (2,150억원)보다 △150억원 감액된 2,000억원으로 지출계획하고, 시중 은행 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은 금년도(772억원)보다 90억원 증액된 862억원으로 지출계획하고 있으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예수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금년도(125억 3,600만원)보다 △101억 1,600만원 감액한 24억 2,000만원으로 지출계획한 것임

〈표 3-15〉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294,420	392,188	△97,768	
중 소 기 업 직 접 용 자				
민 간 용 자 금	200,000	215,000	△15,000	· 시설 및 경영안정자금 200,000
시 중 은 행 협 력 자 금 지 원				
이 차 보 전 금	86,200	77,200	9,000	·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86,200
자 금 통 합 관 리 시 스템 유 지 보 수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1	240	61	· 자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301
기 금 업 무 대 행 수 수 료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200	1,325	△125	· 신규 대출평가 및 사후관리수수료 1,2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이자상환	2,420	12,536	△10,116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이자 상환 2,420
예 치 금				
일 반 예 치 금	4,293	85,880	△81,587	· 예치금 4,293
기 금 관 리 비				
사 무 관 리 비	5	5	-	·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심의회 참석수당 5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2) 투자계정

### ① 조성규모

□ **투자계정**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 투자를 지원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 서울 소재 창업·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지원하고자 운용되고 있음

○ 동 계정의 '25년도말 조성액은 89억 5,400만원으로 '24년도말 조성액(448억 5,900만원)보다 △359억 400만원 감소되는 것으로 제출하였음

〈표 3-16〉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액	
44,859	40,332	76,237	△35,904	8,954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② 운용계획

□ 동 계정의 '25년도 운용계획은 '24년도(1,265억 4,200만원)보다 △413억 5,000만원 감액한 851억 9,200만원으로 계획한 것으로

○ 수입계획의 경우, **기타회계전입금**이 금년도(3,000억원)보다 34억 1,000만원 증액된 334억 1,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예치금회수**는 금년도(887억 6,900만원)보다 △439억 1,000만원 감액된 448억 5,900만원으로 계획한 것임

〈표 3-17〉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85,192	126,542	△41,350	
기 타 사 업 수 입	5,000	4,500	500	· 펀드 회수금
공공예금이자수입	1,900	3,071	△1,171	· 계좌 운용 이자수입
기 타 이 자 수 입	1	4	△3	· 위탁사업비 정산반납액
위탁비반환수입	21	196	△174	· 위탁사업비 정산잔액 환수금
예치금회수	44,859	88,769	△43,910	·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
기타회계전입금	33,410	30,000	3,410	· 일반회계 전입금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동 계정의 지출계획의 경우, 정책사업인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은 금년도(761억 2,200만원)보다 △154억 4,800만원 감액된 606억 7,300만원을 지출계획하고, 재무활동은 **예치금**을 금년도(448억 5,900만원)보다 △359억 400만원 감소된 89억 5,400만원으로 지출계획함에 따라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은 금년도(504억원)보다 △259억 200만원 감소된 244억 9,8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여 제출하였음

〈표 3-18〉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예 산 과 목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85,192	126,542	△41,350	
서울 Vision 2030 펀드 조성				
출 자 금	47,679	48,128	△449	· 서울Vison2030펀드 출자 47,679
서울 미래 혁신 성장 펀드 조성				
출 자 금	11,624	27,372	△15,748	· 서울미래혁신성장펀드 출자 11,624
서울 벤처펀드(미래혁신, Vision 2030)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70	422	48	·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70
녹색 기업 창업 펀드 제 5 호 조성				
출 자 금	900	200	700	· 투자조합 출자 9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원금 상환				
예수금원금상환	13,970	3,920	10,050	· 통합계정 예수금 원금 상환 13,97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이자 상환				
예수금이자상환	1,573	1,620	△47	· 통합계정 예수금 이자 상환 1,573
예 치 금				
일 반 예 치 금	8,954	44,859	△35,904	· 기금 운용 여유자금 8,945
기 본 경 비				
사 무 관 리 비	20	20	-	· 서울바이오펀드 출자 20
스 케 일 업 펀 드 출 자				
출 자 금	-	9,500	△9,500	· 세부사업 개편으로 미편성 -
첫 걸 음 동 행 펀 드 출 자				
출 자 금	-	5,100	△5,100	· 세부사업 개편으로 미편성 -
디 지 털 대 정 환 펀 드 출 자				
출 자 금	-	9,600	△9,600	· 세부사업 개편으로 미편성 -
창 업 지 원 펀 드 출 자				
출 자 금	-	15,500	△15,500	· 세부사업 개편으로 미편성 -
서 울 바 이 오 펀 드 출 자				
출 자 금	-	10,500	△10,500	· 세부사업 개편으로 미편성 -
창 조 산 업 펀 드 출 자				
출 자 금	-	10,300	△10,300	· 세부사업 개편으로 미편성 -
제 4 차 산 업 혁 명 펀 드 출 자				
출 자 금	-	4,800	△4,800	· 세부사업 개편으로 미편성 -
스 마 트 시 티 펀 드 출 자				
출 자 금	-	4,500	△4,500	· 세부사업 개편으로 미편성 -
재 도 전 지 원 펀 드 출 자				
출 자 금	-	1,800	△1,800	· 세부사업 개편으로 미편성 -
첨 단 제 조 펀 드 출 자				
출 자 금	-	3,900	△3,900	· 세부사업 개편으로 미편성 -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sup>19)</sup>은 출자금을 편성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기금의 지출계획중 **서울 Vision 2030 펀드 조성**을 포함한 3개 세부사업의 경우,<sup>20)</sup> 조례로 정하고 있는 예산안의 제출일('24.11. 1)까지<sup>21)</sup> 시의회로부터 출자금 편성을 위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관 상임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의 관련 출자 동의안 의결 결과에 따라 출자금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19〉 출자 동의안 미료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출자금	의 안 명 ( 의 안 번 호 )	제 출 일	의안처리 예 정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경제실)	서울 Vision 2030 펀드 조성	47,679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의안번호 2058)	'24. 8.12	수정가결 '24.11.26
"	서울 미래 혁신성장 펀드 조성	11,624	"		
"	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 조성	900	"		

19)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0)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① 의안번호 : 2058, ② 제출 : '24. 8.12, ③ 심사예정 : '24.11.26

2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

① 시장 및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사회적경제계정

#### ① 조성규모

- 사회적경제계정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리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원 마련에 기여하고자 운영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계정의 '25년도말 조성액은 584억 4,900만원으로 '24년도말 조성액(572억 5,100만원)보다 11억 9,700만원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표 3-20〉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액	
57,251	13,359	12,161	1,197	58,449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② 운용계획

- 동 계정의 '25년도 운용계획은 '24년도보다 △20억 5,800만원 감소한 406억 1,000만원으로 계획한 바,
-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을 '24년도(105억 3,900만원)보다 3억 3,300만원 증액된 108억 7,300만원으로 계획하고, 예치금회수는 금년도(306억 9,300만원)보다 △34억 4,100만원 감액된 272억 5,100만원으로 계획하고, 예탁금이자수입은 금년도(8억 8,400만원)보다 3억 6,600만원 증액된 12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여 수입계획을 제출하였음

〈표 3-21〉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40,610	42,669	△2,058	
공공예금이자수입	1,111	521	590	· 공공예금 이자
용자금회수이자수입	123	30	92	· 민간용자금 이자 회수수입
민간용자금회수수입	10,873	10,539	333	· 민간용자금 원금 회수수입
예치금회수	27,251	30,693	△3,441	· 예치금 회수
예탁금이자수입	1,251	884	366	· 예탁금 이자 수입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지출계획의 경우,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은 금년도(3억 7,000만원)보다 △2억 4,000만원 감소된 1억 3,000만원으로 지출계획 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 사업의 융자금은 금년도(50억원)보다 10억원 증액된 60억원으로 지출계획하고,
  - 재무활동은 **예치금**을 금년도(272억 5,100만원)보다 △88억 200만원 감소된 184억 4,9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 하는 **예탁금**은 금년도(100억원)와 동일하게 지출계획함으로써 정책사업 인 **재무활동**은 금년도(372억 5,100만원)보다 △88억 200만원 감소된 284억 4,9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여 제출하였음



〈표 3-22〉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025	202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40,610	42,669	△2,058	
코 로 나 1 9 피 해 기 업 이 차 보 전				
이 차 보 전 금	130	370	△240	· 코로나19 피해기업 이차보전 130
사 회 적 경 제 기 업 투 용 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	7	△0	· 기금업무 대생 수수료 6
민 간 용 자 금	6,000	5,000	1,000	· 사회적경제기업 용자 6,000
출 자 금	6,000	-	6,000	· 사회적경제기업 투자펀드 출자 6,000
채 권 및 기 타 관 리 비				
사 무 관 리 비	15	30	△15	· 채권관리비용(법적조치 수수료 등) 15
여 유 자 금 예 치				
일 반 예 치 금	18,449	27,251	△8,802	· 여유자금 예치 18,449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예 치				
예 탁 금	10,000	10,000	-	· 여유자금 예탁 10,000
기 금 관 리 비				
사 무 관 리 비	10	10	-	·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10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22)은 출자금을 편성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기금의 지출계획중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의 경우,<sup>23)</sup> 조례로 정하고 있는 예산안의 제출일('24.11. 1)까지<sup>24)</sup> 시의회로부터 출자금 편성을 위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관 상임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의 관련 출자 동의안 의결 결과에 따라 출자금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23〉 출자 동의안 미료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출자금	의 안 명 ( 의 안 번 호 )	제 출 일	의안처리 예 정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민생노동국)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	6,000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출자 동의안 (의안번호 2276)	'24.10.16	'24.11.28

22)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3)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 출자 동의안」

① 의안번호 : 2276, ② 제출 : '24.10.18, ③ 심사예정 : '24.11.28

24)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

① 시장 및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식품진흥기금

#### 1) 조성규모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sup>25)</sup>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sup>26)</sup>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sup>27)</sup>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수입과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운용이자 등을 수입원으로 하여 식품의 위생을 강화하고 시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운용되고 있음
- 동 기금의 '25년도말 조성액은 569억 2,200만원으로 '24년도말(512억 5,800만원)보다 56억 6,400만원 증액되는 것으로 계획함

〈표 3-24〉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액	
51,258	8,972	3,308	5,664	56,922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5)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26)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32조제1항 각 호(제9호,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2) 운용계획

- 동 기금의 '25년도 운용계획은 '24년도(205억 5,800만원)보다 △23억 2,700만원 감액된 182억 3,100만원임
- 수입계획의 주요 증감내역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을 금년보다(16억 3,500만원) 39억 7,100만원 증가한 56억 600만원으로 계획하고, 전년도 이월금에 대한 예치금 회수를 금년보다(160억 7,100만원) △68억 1,200만원 감액 편성한 92억 5,800만원으로 수입계획한 것임

〈표 3-25〉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025	202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18,231	20,558	△2,327	
공공예금이자수입	405	214	191	·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
융자금회수이자수입	22	17	5	· 융자금 이자
기 타 이 자 수 입	3	4	0	· 보조금 반납액 이자
사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6	262	△236	· 자치단체 보조금 사용잔액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6	5	0	· 민간보조금 사용잔액
과 징 금	1,148	798	350	· 식품위생법 등 위반 과징금 시 귀속분
민간융자금회수수입	5,606	1,635	3,971	· 융자금 잔액 및 회수 수입
예 치 금 회 수	9,258	16,071	△6,812	· 전년도 이월금
예탁금이자수입	1,751	1,547	203	· 예탁금 이자 수입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지출계획의 경우, 금년도(205억 5,800만원)보다 △23억 2,700만원 감액된 182억 3,100만원인 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이 금년도(1,300만원)와 동일한 1,3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고, **재무활동**의 경우, **예탁금**은 금년도(70억원)보다 30억원 증액 편성한 100억원을 지출계획하고, **예치금**은 금년도(92억 5,800만원)보다 △43억 3,500만원 감액 편성한 49억 2,200만원으로 지출계획한 것임

〈표 3-25A〉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예 산 과 목	2025	202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18,231	20,558	△2,327	
식 품 위 생 영 업 자 민 간 용 자 지 원					
민 간 용 자 금	1,500	2,000	△500	· 식품진흥기금 민간 용자	1,500
소 비 자 식 품 위 생 감 시 원 교 육 및 운 영					
사 무 관 리 비	8	8	-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협의회 참석수당	2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운영	3
				·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상해보험 가입	2
행 사 운 영 비	5	5	-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실무연수비	5
기 타 보 상 금	21	21	-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실무교육비	21
식 품 접 객 영 업 자 등 위 생 교 육 비 지 원					
사 무 관 리 비	20	20	0	· 위생교육 등 홍보물 제작	20
민간경상사업보조	396	534	△137	· 한국외식업중앙회	229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109
				· 대한제과협회	44
				· 한국유희음식업중앙회	14
선 제 적 식 중 독 예 방 활 동 강 화					
사 무 관 리 비	115	115	-	· 식중독예방 홍보물품 등 구매	10
				· 식중독 문자지수 서비스	20
				· 1830손씻기 교육 및 식중독 예방 진단사업	75
				· 식중독 대응요원 등 현장대응능력 향상 교육비	10
기 타 보 상 금	70	70	0	·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지원활동비	20
				·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지원활동비	50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표 3-26B〉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주요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예 산 과 목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18,231	18,558	
먹 거 리 통 계 및 기 반 구 축				
사 무 관 리 비	181	248	△67	· 서울시 먹거리통계조사 134 · 밀라노협약상 제출 및 홍보 등 25 · 콘퍼런스 사전 자문회의, 통역비 등 22
행 사 운 영 비	55	-	55	· 도시먹거리 국제컨퍼런스 개최 55
먹 거 리 전 략 식 거 버 너 스 운 영 및 활 성 화				
사 무 관 리 비	13	13	-	· 먹거리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13
식 품 안 전 정 보 누 리 집 운 영 및 유 지 보 수				
사 무 관 리 비	1	5	△3	·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1
공 공 운 영 비	70	67	3	· 응용SW 유지관리 66 · 상용SW 유지관리 4
식 품 안 전 전 문 교 육				
사 무 관 리 비	100	100	0	· 위원회 및 회의운영 4 · 식품안전 전문교육 96
식 품 위 생 업 소 지 도 점 검				
사 무 관 리 비	33	98	△65	· 위생점검관련사무용품 구입및식품위생홍보물 제작등 30 · 유흥시설 등 마약류 예방 홍보물 제작 3
재 료 비	6	6	-	· 시약구매비 6
기 타 보 상 금	334	310	24	·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19 · 위생지도서비스 20 · 식품제조 판매업소 합동점검 15 · 식품제조 판매업소 등 자체점검 20 · 자료조사 및 교육 홍보 40 · 시민안전법상카미 위해요소 관리 활동 40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표 3-26C〉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주요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18,231	18,558	△2,327	
전 통 시 장 위 생 지 도				
사 무 관 리 비	10	16	△6	· 전통시장 위생관리 위생용품 지원 10
서 울 시 민 식 품 위 해 요 소 발 굴 및 개 선				
사 무 관 리 비	10	20	△10	· 위해요인 개선회의 운영 1 · 시민안전밥상지킴이 교육 자료 제작 1 · 위해요소 예방 가이드 북 제작 7
자 치 구 식 품 안 전 및 위 생 분 야 종 합 평 가				
사 무 관 리 비	2	2	-	· 평가지표검토위원회 등 수당지급 1 · 평가자료집 제작 등 운영비 0.5 · 자치구 사업설명회 및 결과보고회 0.5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350	350	-	· 식품안전추진 사업비 지원(대상) 50 · 식품안전추진 사업비 지원(최우수) 90 · 우수 140 · 노력 30 · 특수사업 40
여 유 자 금 예 탁				
예 탁 금	10,000	7,000	3,000	· 예탁금 10,000
여 유 자 금 예 치				
일 반 예 치 금	4,922	9,258	△4,335	· 예치금 4,922
기 금 관 리 비				
사 무 관 리 비	5	5	-	· 심의회 운영 등 기금관리비 5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4) 기후대응기금

##### 1) 조성규모

- 기후대응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8)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등의 촉진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기금임
- 동 기금은 '25년도말 226억 6,000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24년도말 조성액(415억 7,900만원)보다 △189억 1,800만원 감소된 것임

〈표 3-27〉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액	
41,579	12,567	31,485	△18,918	22,660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 운용계획

- 동 기금은 '25년도에 501억 4,6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금년도 운용규모(786억 9,100만원)보다 △285억 4,400만원 감액된 것임
- 수입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을 금년도와 동일한 120억원으로 계획하고, 예탁금이자수입은 금년도(12억 3,800만원)보다 △5억 7,000만원 감액된 6억 6,7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예치금회수의 경우에는 금년도(476억 4,300만원)보다 △220억 6,300만원 감액된 255억 7,9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28)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표 3-28〉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50,146	78,691	△28,544	
공 유 재 산 임 대 료	54	54	-	· 노을연료전지 발전사업 부지 임대료 · 개화차량기지 태양광발전사업 부지 임대료
배 당 금 수 입	2,337	2,752	△414	· 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배당금
공 공 예 금 이 자 수 입	523	816	△293	· 공공예금 이자수입
용 자 금 회 수 이 자 수 입	91	197	△106	· 서울에너지공사 용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
그 외 수 입	398	362	35	· 태양광 발전 전력판매 수입 · 마곡 플러스에너지타운 운영 수입 · 수요자원시장 정산금 · 에너지드림센터 전력판매수입
민 간 용 자 금 회 수 수 입	6,543	11,566	△5,022	· 민간용자사업 원금 회수수입
공 사 공 단 등 용 자 금 회 수 수 입	610	610	-	· 서울에너지공사 용자금 원금 회수수입
예 치 금 회 수	25,579	47,643	△22,063	· 전년도말 예치금 잔액
기 타 회 계 전 입 금	1,341	1,450	△109	· 온실가스 배출권 매수 비용 환수
예 탁 금 원 금 회 수 수 입	12,000	12,000	-	·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예 탁 금 이 자 수 입	667	1,238	△570	·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지출계획의 경우에도 금년도(786억 9,100만원)보다 △285억 4,400만원 감액된 501억 4,600만원으로 제출된 바,

- 예치금을 금년도(255억 7,900만원)보다 △69억 1,800만원 감액편성한 186억 6,0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고, **기후변화대응 혁신기술 실증지원사업**은 금년도(10억원)와 동일한 10억원으로 지출계획하고,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도 금년도(1억 5,000만원)와 동일한 1억 5,000만원으로 지출계획한 것임

〈표 3-29A〉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예 산 과 목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50,146	78,691	△28,544	
여 유 자 금 예 치					
일반예치금	18,660	25,579	△6,918	· 여유자금 예치	18,660
기 후 변 화 대 응 혁 신 기 술 실 증 지 원 사 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00	1,000	-	· 혁신기술 실증지원 및 검증 · 대행수수료 및 운영비 등	900 100
온 실 가 스 배 출 권 거 래 제 배 출 권 관 리					
공공운영비	1,990	2,047	△57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관리	1,990
녹 색 기 업 창 업 펀 드 운 영 및 조 성					
출자금	400	1,200	△800	·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6호 출자	400
민 간 건 물 에 너 지 효 율 화 지 원					
사무관리비	35	38	△3	· 민간BRP 용자원사업홍보리플릿제작등 · 민간 BRP 용자 심의위원 수당 지급	10 25
전산개발비	18	19	△1	· 웹 취약점 조치 및 접근성 개선 등	18
민간경상사업보조	225	280	△55	· 안심집수리에너지효율개선 보조금 지원	225
이차보전금	468	396	72	· 이차보전금 지원	468
민간융자금	15,000	30,000	△15,000	· 건물 및 주택 부문 에너지효율화 용자원	15,000
노 후 주 택 에 너 지 효 율 화 지 원					
사무관리비	50	50	-	· 사업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50
전산개발비	13	20	△6	· 온라인 자원시스템 유지보수	13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	1,500	-	· 에너지효율화 공사비 보조금	1,500
경 로 당 서 울 형 에 너 지 관 리 시 스템 (SEMS) 도 입					
사무관리비	50	50	-	· SEMS실증운영 및 효과성 분석비	50
민 간 건 물 신 재 생 에 너 지 보 급					
사무관리비	4	5	△1	· 사업 관련 자문 심의 등 운영비	4
민간경상사업보조	501	1,001	△500	· BIPV 민간보급 사업 · 주택지원사업(태양열, 지열)	500 1
서 울 형 햇 빛 발 전 지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	500	△200	· 햇빛발전 지원	300
태 양 광 발 전 시 설 설 치 자 금 지 원					
이차보전금	6	6	-	· 태양광 발전자금 이차보전	6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표 3-29B〉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예 산 과 목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50,146	78,691	△28,544
주 민 수 요 반 응 서 비 스 운 영				
사 무 관 리 비	30	20	10	· 수요반응(DR) 서비스 홍보 30
공 공 운 영 비	70	30	40	· 수요반응(DR) 서비스 운영비 70
기 타 보 상 금	136	192	△56	· 수요반응 인센티브 136
동 북 권 집 단 에 너 지 공 급 확 대 사 업				
응 자 금	1,147	11,014	△9,867	· 동북권 집단에너지 공급 1,147
친 환 경 실 천 우 수 아 파 트 선 발 대 회				
사 무 관 리 비	50	50	-	· 경진대회 포스터 10 · 경진대회 전단지 10 · 아파트 에너지절약 가이드북 15 ·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10 · 대회 심사비지급 5
일 반 보 전 금	100	100	-	· 시상금지급(대상) 20 · 시상금지급(최우수상) 45 · 시상금지급(우수상) 35
지 열 설 비 효 율 개 선 지 원 사 업				
민 간 자 본 사 업 보 조	500	450	50	· 지열 설비 효율 개선 지원 500
노 원 열 원 시 설 안 정 화 사 업 ( 2 단 계 )				
공 사·공 단 등 응 자 금	6,840	-	6,840	· 노원 열원시설 안정화 사업(2단계) 6,840
신 재 생 에 너 지 공 급 인 증 서 판 매 보 증 금 지 원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15	-	15	· 자치구(도봉,성북) REC 판매금 재교부 15
재 활 용 사 업 자 육 성 자 금 응 자 지 원				
이 차 보 전 금	28	25	3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8
민 간 응 자 금	1,000	1,000	-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1,000
제 로 웨 이 스톱 다 회 용 기 사 업 자 육 성 지 원				
이 차 보 전 금	2	2	-	· 다회용기 사업자 지원 이차보전금 2
기 금 관 리 비				
사 무 관 리 비	5	10	△5	· 기금관리비 5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동 기금의 지출계획중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및 조성**의 경우, 출자금 4 억원을 편성하여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6호 출자금으로 지출계획하는 것인 바,

- 기금운용부서(기후환경정책과)가 제출한 사업별설명서중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에는 출자에 대한 동의를 지난 ’23년 12월, 제321회 본회의 (’23.12.15)를 통하여 얻은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
- 지난 ’23년도에 시의회로부터 의결받은 관련 출자 동의안에는 기후대응 기금 20억원을 서울시 녹색기업창업펀드에 출자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24년도에는 12억원, ’25년도에는 8억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으로 확인됨<sup>29)</sup>
- 기금운용부서로서는 이미 지난 ’23년도에 ’24년도에 출자할 12억원과 ’25년도에 출자하고자 계획한 8억원에 대해 시의회로부터 미리 동의를 얻어 ’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지출계획한 출자금(4억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출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사료됨

〈표 3-30〉 출자 동의안 미료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출 자 금	의 안 명 (의안번호)	제 출 일	의 안 처 리 예 정
기후대응기금 (기후환경본부)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및 조성	400	미제출	-	-

29)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

① 의안번호 : 1472, ② 제출 : ’23.11. 3, ③ 의결 : ’23.12.15 (가결)

- 그러나 출자금을 편성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출자의 규모가 아니라 출자 자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2조<sup>30)</sup>에 근거하여 예산을 심사·의결·확정하는 법정절차까지 미리 기속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현행 「지방자치법」 및 「지방회계법」에는 「출자 동의안」을 통해 다음연도 지출계획까지 미리 담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 '23년도에 시의회로부터 동의를 얻어 편성한 '24년도 출자금 12억원과 '25년도 편성요청한 출자금 4억원은 별개의 사안으로 사료되며

■ 행정안전부가 지난 '15년도에 「지방재정법」 중 출자·출연에 대한 사전동의에 관한 법조항을 신설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미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 취지로서 매년 출자·출연해 온 기관 또는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경우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로 통보한 바 있음<sup>31)</sup>

■ 다만,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는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출자·출연 및 연례적·반복적 출자·출연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일정기간 정하여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sup>32)</sup>

30)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31)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5653 ('15.10.19)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자·출연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 기준 통보”

32)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4. 7), p.124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에 관련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23년도에 시의회로부터 동의를 얻었다하여 '24년도 출자금(12억원)에 이어 '25년도에 편성요청한 출자금(4억원)까지 미리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출자금 편성과 관련된 「출자 동의안」 이 현재까지 의회에 제출된 사실이 없어 편성요청된 출자금 4억원에 대한 승인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 (5) 도로굴착복구기금

### 1) 조성규모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sup>33)</sup>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하고자 운용되고 있음
- 동 기금의 '25년도말 조성규모 263억 2,000만원으로 금년도말 조성액(219억 7,600만원)보다 43억 4,300만원 증액된 것임

〈표 3-31〉 202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액	
21,976	41,925	37,581	4,343	26,320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 운용계획

- 동 기금은 금년도(672억 4,700만원)보다 △33억 4,600만원 감액된 639억 100만원으로 운용계획된 바,
- 수입계획중 정기예금 이자수입인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금년도보다(5억 2,000만원) 2억 7,600만원 증가한 7억 9,600만원으로 계획하였고,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은 금년도보다(350억원) 61억 2,900만원 증액한 411억 2,9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예치금 회수는 금년도(317억 2,700만원)보다 △97억 5,100만원 감액된 219억 7,6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33)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굴착 등에 따른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재원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표 3-32〉 202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63,901	67,247	△3,346	
공공예금이자수입	796	520	276	·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 담 금	41,129	35,000	6,129	·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예 치 금 회 수	21,976	31,727	△9,751	· 예치금회수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지출계획의 경우에는 예치금이 금년(219억 7,600만원)보다 43억 4,300만원 증액된 263억 2,0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고,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금년도(452억 5,600만원)보다 △76억 8,900만원 감액한 375억 6,600만원으로 지출 계획 하였음

〈표 3-33〉 202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예 산 과 목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63,901	67,247	
도 로 굴 착 복 구 공 사				
· 시설비	37,136	44,836	△7,700	· 굴착복구공사 34,300
· 감리비	2,700	1,800	900	· 도로굴착복구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700
· 시설부대비	36,000	36,000	-	· 굴착복구업무 사무관리비 및 부대경비 36
도 로 굴 착 복 구 시 스템 개 발 및 유 지 운 영				
· 사무관리비	4	-	4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운영SW 구매 4
· 공공운영비	425	420	5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425
여 유 자 금 예 치 (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				
· 일반예치금	26,320	21,976	4,343	· 여유자금 예치 26,320
기 금 관 리 비				
· 사무관리비	15	15	-	· 위원회 수당, 전문가 자문수당 등 15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6) 양성평등가족기금

### 1) 조성규모

- 양성평등가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sup>34)</sup> 및 「서울특별시 양성평등기본 조례」<sup>35)</sup>에 따라 성평등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성평등한 사회문화 확대, 민간단체의 역량개발 및 협력을 도모하고자 운용되는 기금임
- 동 기금은 '24년도말 조성액(241억 7,600만원)보다 △1,800만원 감액된 241억 5,800만원을 '25년도말 조성액으로 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표 3-34〉 2025년도 양성평등가족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액	
24,176	1,111	1,130	△18	24,158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 운용계획

- 동 기금은 '25년도에 20억 8,800만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24년도(20억 5,600만원)보다 3,100만원 증가한 것임
- 수입계획의 경우, 통합계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이자수입**을 금년도(10억 2,500만원)보다 △5,800만원 감액한 9억 6,700만원으로 계획하고,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는 금년도(8억 9,300만원)보다 8,300만원 증액된 9억 7,600만원 등으로 수입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34)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35)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0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표 3-35〉 2025년도 양성평등가족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2,088	2,056	31	
공공예금이자수입	13	9	3	· 공공예금 이자
기타이자수입 <sup>주1)</sup>	0	0	0	· 단체 지원금 발생이자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30	27	2	· 단체 지원금 반납금
예치금회수	976	893	83	· 전년도 이월금
기타회계전입금	100	100	-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예탁금이자수입	967	1,025	△58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주1) 기타이자수입의 경우에는 '25년도 24만 9,000원, '24년도 19만 1,000원을 수입계획하고 있음

- 지출계획의 경우에는 예치금을 금년도(9억 7,600만원)보다 △1,800만원 감액한 9억 5,800만원으로 계획하고, 아동, 청소년 성범죄 및 성폭력 예방교육 사업은 금년도(5,000만원)와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고,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심 지킴이 운영은 금년도(0원)보다 5,000만원 증액된 5,000만원 등으로 지출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표 3-36〉 2025년도 양성평등가족기금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예 산 과 목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2,088	2,056	31
여 유 자 금 예 치 ( 양 성 평 등 가 족 기 금 )				
일 반 예 치 금	958	976	△18	· 여유자금 예치 958
양 성 평 등 가 족 기 금 공 모 사 업				
사 무 관 리 비	50	50	-	· 공모사업 컨설팅 50
민간경상사업보조	620	483	136	· 공모사업 62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7	7	-	· 신문공고료 7
양 성 평 등 주 간 기 념 행 사				
사 무 관 리 비	10	10	-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진행비 등 2 · 성평등상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수당 등 3 · 성평등상 추천 공고 및 홍보 5
행 사 운 영 비	50	50	-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50
양 성 평 등 문 화 확 산 을 위 한 단 체 지 원				
민간단체법정 운 영 비 지 원	100	100	-	· 양성평등단체 운영비 지원 100
아 동, 청 소 년 성 범 죄 및 성 폭 력 예 방 교 육 사 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	50	-	· 아동·청소년 성범죄 및 성폭력 예방교육 50
아 동 · 청 소 년 온 라 인 안 심 지 킴 이 운 영				
사 무 관 리 비	6	0	6	· 위원회 등 수당 6
민간경상사업보조	44	0	44	· 아동, 청소년 온라인 안심지킴이 양성 44 ·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심 지킴이 운영
양 육 행 복 도 시 성 과 평 가				
연 구 용 역 비	100	109	△9	· 저출생 대응 정책 성과평가 용역 100
아 이 사 랑 홈 인 증 사 업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80	50	30	· 양육친화 환경개선 지원 80
기 금 관 리 비				
사 무 관 리 비	13	13	0	· 심사자료 제작비 1 · 심의회 심사수당 등 12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7)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 조성규모**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sup>36)</sup> 및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sup>37)</sup>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용하는 기금임

○ 동 기금의 '25년도말 조성액은 106억 5,500만원으로 금년도말 조성액 (126억 7,800만원)보다 △20억 2,3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계획함

〈표 3-37〉 2025년도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액	
12,678	33,037	35,060	△2,023	10,655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운용계획**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25년도에 437억 1,5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금년도(433억 8,500만원)보다 3억 3,000만원 증액하여 운용할 것으로 계획함

3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37)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2조,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수입계획중 금년도대비 주요변동 예산과목인 예치금회수는 금년도 85억 9,400만원)보다 20억 8,400만원 증액된 106억 7,800만원을 수입계획 하고, 기타회계전입금은 금년도(344억 4,300만원)보다 △17억 8,300만원 감액된 326억 5,900만원을 수입계획하여 제출하였음

〈표 3-38〉 2025년도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43,715	43,385	330	
공공예금이자수입	294	260	34	· 예치금 이자수입
예 치 금 회 수	10,678	8,594	2,084	· 전년도 기금운영 집행잔액 회수
기 타 회 계 전 입 금	32,659	34,443	△1,783	· 기금 전입금
예 탁 금 이 자 수 입	83	88	△5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지출계획의 경우, **난방비지원**<sup>38)</sup>은 양천, 강남, 노원의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 내 공동주택 거주 주민에 대한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3개 세부사업 112억 9,100만원을 계획하여 금년도보다 14억 7,200만원을 증액한 것이며

-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sup>39)</sup>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아파트관리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는 단위사업으로 2개 세부사업 113억 5,500만원을 지출계획한 것으로 검토됨

38) ■ 단위사업명 : 난방비 지원(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역기금)

- 세부사업명 : 양천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지원  
강남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지원  
노원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지원

39) ■ 단위사업명 :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역기금)

- 세부사업명 : 노원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아파트 관리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비지원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아파트 관리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비지원
- 단위사업명 : 주민복지증진사업비(관리비/임대비)지원(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역기금)
- 세부사업명 : 강남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아파트 관리비 및 임대료지원  
노원주민 편익시설 이용료지원

〈표 3-39〉 2025년도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편 성 목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43,715	43,385	330	
양천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166	3,623	543	·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주민 난방비 지원	4,166
강남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731	1,505	225	·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주민 난방비 지원	1,731
노원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393	4,690	703	·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주민 난방비 지원	5,393
양천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86	184	2	· 양천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186
강남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97	282	15	· 강남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297
노원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50	222	127	· 노원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350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51	139	11	·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151
노원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아파트 관리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850	6,850	-	· 노원 지역주민 아파트 관리비 지원 · 노원 지역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6,814 35
양천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아파트 관리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505	4,061	443	· 양천 지역주민 아파트 관리비 지원	4,505
강남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아파트 관리비 및 임대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1,283	11,002	280	· 강남 지역주민 아파트 관리비 지원 및 임대료 지원	11,283
노원주민편익시설 이용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45	145	-	· 노원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지원	145
여 유 자 금 예 치					
일반예치금	8,655	10,678	△2,023	· 여유자금 예치	8,655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8) 사회복지기금

- 사회복지기금은 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40)에 근거하며 복지서비스 대상에 따라 노인계정·장애인계정·자활계정·주거지원계정 총 4개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음

### 1) 노인복지계정

#### ① 조성규모

- 노인복지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노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의 사회 참여활동 및 여가활동을 지원 하는 계정임
- 동 계정은 '25년 말 120억 5,100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도말 조성액 (119억 9,600만원)보다 5,500만원 증액된 것임

〈표 3-40〉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 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액	
11,996	520	464	55	12,051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0)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운용계획**

□ 동 계정은 '25년도에 10억 2,6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24년도(11억 5,500만원)보다 △1억 2,900만원 감액된 것임

○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를 '24년도(5억 5,500만원)보다 △4,900만원 감액한 5억 6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고, 그 외 수입을 금년도(3,000만원)와 동일하게 수입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표 3-41〉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1,026	1,155	△129	
공공예금이자수입	10	17	△6	· 공공예금 발생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sup>주1)</sup>	0	0	0	· 기타 이자수입
사도보조금등반환수입	0	45	△44	· 보조금 반환수입
그 외 수 입	30	30	-	· 그외수입
예 치 금 회 수	506	555	△49	· 전년도 이월금 등
예 탁 금 이 자 수 입	479	508	△28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주1) 기타이자수입의 경우에는 '25년도 13만 6,000원, '24년도 17만원을 수입계획하고 있음

○ 지출계획은 금년도 보다 △1억 2,900만원 감액된 10억 2,600만원으로 지출계획한 것으로, 사업내용중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운영지원을 금년도보다 △9,000만원 감액한 2억 4,0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고, 기타 사업내용은 금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지출계획하는 것으로 사료됨



〈표 3-42〉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025	202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1026	1155	△129	
어 르 신 정 보 화 교 육				
사회복지사업보조	40	40	0	· 어르신 컴퓨터교실운영 40
어 르 신 일 자 리 사 업 장 운 영 지 원				
사회복지사업보조	240	330	△90	· 사업장 임대자금 용자지원 240
시 설 종 사 자 역 량 강 화				
사회복지사업보조	109	109	-	·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워크숍 5 · 어르신 생활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30 · 어르신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워크숍 10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 5 ·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 14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워크숍 10 · 노인양로시설 종사자 워크숍 10 ·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교육 25
어 르 신 주 거 지 원				
사회복지사업보조	72	72	-	· 어르신 공동생활주택(노인의집) 운영 72
여 유 자 금 예 치				
일반예치금	561	506	55	· 예치금 561
기 금 관 리 비				
사무관리비	3	3	-	· 심의위원회 수당, 회의개최비용 등 3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2) 장애인복지계정

### ① 조성규모

□ **장애인복지계정**은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장애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설치된 계정임

○ 동 계정은 '25년도말에 125억 8,700만원을 조성할 것으로 계획한 것이나, '24년도말 조성액(177억 6,700만원)보다 △51억 7,900만원 감액된 것임

〈표 3-43〉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 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액	
17,767	2,235	7,415	△5,179	12,587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② 운용계획

□ 동 계정은 '25년도에 76억 2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24년도 운용규모 (107억 8,700만원)보다 △31억 8,400만원 감소된 것임

○ 수입계획의 경우, 예치금회수가 금년도(81억 7,200만원)보다 △48억 500만원 감액된 33억 6,700만원, 전세자금융자금 회수가 금년도(17억 5,300만원)보다 △2억 7,600만원 감액된 14억 7,6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여 제출 한 것임

〈표 3-44〉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7,602	10,787	△3,184	
공공예금이자수입	149	213	△64	·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회수이자수입	9	11	△1	·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476	1,753	△276	· 전세자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회수	3,367	8,172	△4,805	· 전년도 이월금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000	-	2,00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이자수입	600	636	△36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지출계획은 금년도보다 △31억 8,400만원 감액하여 지출계획한 것으로 **예치금이 금년(33억 6,700만원)보다 △31억 7,900만원 감액된 1억 8,7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고,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은 금년도(74억원)와 동일한 74억원을 지출계획한 것임**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41)은 기금사업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사업중 민간융자금을 편성한 사업이 다수 있어 동 기금사업의 경우에도 예산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41)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287

-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 혁신

※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 중 폐지·통합이 필요한 기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 요청

〈표 3-45〉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예 산 과 목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7,602	10,787	
장 애 인 전 세 주 택 지 원 사 업				
민 간 용 자 금	7,400	7,400	-	· 민간용자금 7,400
여유자금예치(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일 반 예 치 금	187	3,367	△3,179	· 여유자금 예치 187
기 금 관 리 비				
사 무 관 리 비	15	20	△5	· 기금관리비 등 15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3) 자활계정

#### ① 조성규모

- 자활계정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시민에게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자활사업을 지원하고자 설치된 계정임
- 동 계정은 '24년도말 조성액(90억 8,600만원)보다 △3억 300만원 감액된 87억 8,200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제출함

〈표 3-46〉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2004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액	
9,086	583	887	△303	8,782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② 운용계획

- 동 계정은 '25년도에 52억 4,9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당해연도 운용규모(59억 2,900만원)보다 △6억 8,000만원 감액된 것임
-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가 금년도(54억 3,300만원)보다 △7억 6,700만원 감액된 46억 6,6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금년도(6,100만원)보다 1억 800만원 증액된 1억 6,9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여 제출되었음

〈표 3-47〉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5,249	5,929	△680	
공공예금이자수입	199	216	△17	· 공공예금 이자수입
용자금회수이자수입	25	18	6	· 민간용자금 이자수입
기 타 이 자 수 입	0	0	0	· 기타이자수입
그 외 수 입	5	4	0	· 그외 수입
민간용자금회수수입	169	61	108	· 전세점포 임대자금 회수금
예 치 금 회 수	4,666	5,433	△767	· 예치금 회수
예 탁 금 이 자 수 입	184	195	△11	· 예탁금 이자수입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지출계획의 주요 증감내역은 예치금을 금년도(46억 6,600만원)보다 △3억 300만원 감액한 43억 6,2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 용자 지원** 사업은 금년도(6억 1,500만원)보다 △3억 600만원 감액한 3억 9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여 제출하였음

〈표 3-48〉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예 산 과 목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5,249	5,929	
자 활 총 합 경 영 지 원 사 업				
민 간 위 탁 금	80	80	-	· 경영컨설팅 지원 35 · 자활상품 디자인 개선 18 · 시설 등 장비 지원 27
자 활 교 육 훈 련				
민 간 위 탁 금	110	114	△4	· 참여자, 종사자 등 전문교육훈련 54 · 자격증 취득 지원 26 · 민관합동워크숍 30
광 역 자 활 사 업 육 성 및 지 원				
민 간 위 탁 금	272	328	△56	· 자활기업 사업지원 12 · 광역사업지원 15 · <del>업종별사업단내역</del> 자활업신사업개발 23 · 서울형 자활사업 개발 121 · 서울형 희망드림 프로젝트 28 · 서울광역자활센터 관리비 54 · 자활사례관리 지원사업 17
자 활 유 통 활 성 화				
민 간 위 탁 금	55	59	△4	· 시장 판로개척 30 · 자활상품 지원 25
전 세 점 포 임 대 자 금 용 자 지 원				
민 간 용 자 금	309	615	△306	· 전세점포 임대자금 용자지원 309
자 활 조 사 , 홍 보 및 연 대 사 업				
민 간 위 탁 금	56	60	△4	· 자활사업조사, 연구 33 · 자활사업 홍보 18 · 유관기관 연대사업 5
여 유 자 금 예 치				
일 반 예 치 금	4,362	4,666	△303	· 일반예치금 4362
기 금 관 리 비				
사 무 관 리 비	5	5	0	· 심의위원회 수당, 회의개최 비용 등 5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4) 주거지원계정

- **주거지원계정**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용자 및 주택임대료 보조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설치된 계정임

##### ① 조성규모

- 동 계정의 '25년도말 조성액은 67만 5,300원으로 계획한 바, '24년도 조성액(133억 6,200만원)보다 △66억 900만원 감소한 것임

〈표 3-49〉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액	
13,362	7,671	14,281	△6,609	6,753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② 운용계획

- 동 계정은 '25년도에 210억 3,4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금년도(295억 1,200만원)보다 △84억 7,800만원 감액된 것임
- 수입계획은 **용자금회수이자수입**을 '24년도(2억 5,000만원)와 동일하게 2억 5,0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고, **민간용자금회수수입**은 '24년도(33억 원)보다 30억 3,300만원 증액된 63억 3,300만원 등으로 수입계획하여 제출하였음



〈표 3-50〉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21,034	29,512	△8,478	
공공예금이자수입	557	212	345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용자금회수이자수입	250	250	-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용자 이자수입
그 외 수 입	80	19	60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용자 연체료 및 과년도 서울형 주택바우처 환수금반납
민간용자금회수수입	6,333	3,300	3,033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용자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임대보증금 용자 원금회수
통 화 금 용 기 관 용 자 금 회 수 수 입	450	1,000	△550	·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원금 회수
예 치 금 회 수	13,362	24,731	△11,368	· 예치금 회수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지출계획의 경우,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은 금년도(78억원)보다 8억 3,100만원 증액한 86억 3,100만원을 지출계획 하고,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용자**도 금년도(83억 5,000만원)보다 △27억원 감액한 56억 5,000만원으로 지출계획한 것임

〈표 3-51〉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21,034	29,512	△8,478	
여 유 자 금 예 치				
일반예치금	6,753	13,362	△6,609	· 여유자금 예치 6,753
저 소 득 층 주 택 임 대 료 보 조 지 급				
사회보장적수혜금	8,631	7,800	831	· 서울형 주택바우처 8,631
저 소 득 층 주 택 임 대 보 증 금 용 자				
민 간 용 자 금	5,200	7,350	△2,150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용자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임대 보증금 용자 5,200
통 화 금 용 기 관 용 자 금	450	1,000	△550	·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이사시기 불일치 대출) 450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9) **체육진흥기금**

- **체육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42)에 근거하여 체육진흥 사업과 활동의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자 설치된 기금임

**1) 조성규모**

- 동 기금은 '25년도말 544억 1,900만원을 조성계획한 것으로 '24년도말 조성액(568억 8,700만원)보다 △24억 6,700만원 감액된 것임

〈표 3-52〉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 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액	
56,887	9,725	12,192	△2,467	54,419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운용계획**

- 동 기금은 '25년도에 142억 9,0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금년도 운용 규모(157억 8,600만원)보다 △14억 9,500만원 감액된 것임
- 수입계획의 주요 변동사항은 **기타회계전입금**이 금년도보다 1억 3,800만원 증액된 73억 8,8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고, **예탁금이자수입**은 금년도보다 △1억 3,100만원 감액된 21억 8,1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42)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표 3-53〉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14,290	15,786	△1,495	
공공예금이자수입	155	120	34	·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4,565	6,102	△1,536	· 운용기금 계좌 전액 이월
기타회계전입금	7,388	7,250	138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예탁금이자수입	2,181	2,313	△131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지출계획의 경우, 예치금이 금년보다(45억 6,500만원) △24억 6,700만원 감액한 20억 9,7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고, 그 외 대부분의 세부사업들은 금년도와 지출계획 규모가 유사한 것으로 사료됨

〈표 3-54〉 체육진흥기금 지출계획 중 금년도와 지출계획 규모가 동일한 사업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025 (A)	2024 (B)	증감액 (A-B)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437	437	-
전문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360	360	-
태릉라이플사격장 운영 지원	256	256	-
서울컵 유소년야구대회 개최 지원	100	100	-
체육 취약계층 재능나눔 사업	133	133	-
서울 국제울트라트레일러닝 대회 (서울 100k) 운영	408	408	-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	480	480	-

〈표 3-55A〉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025	202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14,290	15,786	△1,495	
미 래 희 망 스포츠 영재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437	437	-	· 초·중고 저소득층 스포츠 영재 지원 437
학 교 운 동 부 육 성 지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24	425	△1	· 학교운동부 육성비 지원 400 · 학교운동부 창단비 지원 24
전 문 체 육 지 원 프 로 그 램 운 영				
민간경상사업보조	360	360	-	· 전문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360
태 릉 라 이 플 사 격 장 운 영 지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56	256	-	· 국유재산 사용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256
봉 황 기 전 국 고 교 야 구 대 회 개 최 지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20	100	20	· 2025 봉황기 고교야구대회 지원 120
K 4 리 그 참 가 시 민 구 단 지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0	100	△10	· 전지훈련 및 대회참가비 지원 90
야 구 장 시 설 개 보 수				
사무관리비	158	150	8	· 잠실야구장 환경·질서유지 용역 158
시 설 비	2,280	2,815	△535	· 잠실야구장 환경개선공사 650 · 잠실야구장 기계설비 정비공사 100 · 잠실야구장 정기 안전점검 용역 18 · 잠실야구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300 · 잠실야구장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선공사 130 · 구의야구장 조명설비 개선공사 780 · 신월야구공원 내야 인조잔디 교체공사 230 · 목동야구장 전관방송 보수공사 12 · 목동야구장 화장실 비상벨 설치공사 12 · 목동야구장 센서등 신설공사 48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81	68	13	· 신월야구공원 냉난방기 교체 81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표 3-55B〉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14,290	15,786	△1,495	
고 척 스 카 이 돔 시 설 개 선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208	2,236	△27	· 기타 수선유지비 1,937 · 지급수수료 271
잠 실 종 합 운 동 장 등 노 후 체 육 시 설 개 보 수					
시 설 비		4,571	2,962	1,609	· 경장 시설물(전기설비 연간단기) 유지보수공사 360 · 경장 시설물(기계설비 연간단기) 유지보수공사 350 · 경장 시설물(건축,토목 연간단기) 유지보수공사 600 · 경장 시설물(소방설비 연간단기) 유지보수공사 270 · 잠실종합운동장 위험수목 전지공사 80 · 잠실종합운동장 녹지대 정비공사 30 · 잠실종합운동장 용역실 체육관 제수영양, 효창운동장 37 · 잠실종합운동장 비정원공급장치 축전기 교체공사 174 · 잠실실 체육관 경장 노후조명 개선공사 100 · 잠실실 체육관 피팅실비 보강공사 120 · 잠실 제수영양 기계실 노후 전기설비 개선공사 160 · 잠실 제수영양 지하 실폐공압 공기환기 교체공사 50 · 효창운동장 노후시설 및 환경 개선공사 600 · 효창운동장 노후 전력선 교체공사 300 · 잠실종합운동장 외 2개소 옥내 화장실비상벨설치 90 · 잠실실 체육관 환경개선공사 1,250
여 유 자 금 예 치					
예 치 금		2,097	4,565	△2,467	· 여유자금 예치 2,097
기 금 관 리 비					
일 반 운 영 비		10	10	0	· 심의위원회 회의 등 운영경비 10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표 3-55C〉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025	202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14,290	15,786	△1,495	
서울시 어르신 종목별 대회 개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75	80	△5	· 어르신 종목별 대회 개최 지원 75
서울컵 유소년 야구대회 개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	100	-	· 서울컵 유소년 야구대회 개최지원 100
체육 취약계층 재능나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33	133	-	· 체육 취약계층 재능나눔 133
서울 국제울트라트레일러닝 대회(서울100k) 운영				
사무관리비	8	8	-	· 실무회의 운영 등 8
민간경상사업보조	400	400	-	· 서울국제울트라트레일러닝대회 운영 400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80	480	-	·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육성지원 480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10) 재난관리기금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sup>43)</sup> 및 「재해구호법」<sup>44)</sup>, 그리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sup>45)</sup>에 근거하여 설치·운용 중인 기금으로 재난의 사전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난계정**과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피해자의 보호와 생활 안전 기여를 위한 **구호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됨

1) 재난계정

① 조성규모

□ **재난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 수익 등을 재원으로 재난예방 사업, 연구용역 사업, 응급복구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계정으로 '25년도말 조성액은 6,955억 500만원으로 계획한 바, '24년도말 조성액(5,594억 9,100만원)보다 1,360억 1,400만원 증액하여 제출함

〈표 3-56〉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 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액	
559,491	610,723	474,710	136,013	695,505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44) 「재해구호법」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45)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 1호 각 목의 재난 예방과 발생시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운용계획**

- 동 계정은 '25년도에 1조 1,702억 1,5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금년도 운용 규모(9,961억 5,800만원)보다 1,740억 5,600만원 증액된 규모임
- '25년도 수입계획을 '24년도와 비교하면 **예치금회수**를 금년도(7,160억 9,200만원)보다 △1,566억원 감액된 5,594억 9,1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고, **기타회계전입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6)에서 정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금년도(2,283억 7,300만원)보다 3,520억 5,000만원 증액한 5,804억 2,300만원으로 수입계획된 것임

〈표 3-57〉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1,170,215	996,158	174,056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0	30,000	-	·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 외 수 입	300	21,693	△21,393	· 과년도 정산 반납금 등
예 치 금 회 수	559,491	716,092	△156,600	· 예치금 회수
기 타 회 계 전 입 금	580,423	228,373	352,050	· 일반회계 전입금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지출계획의 경우, '24년도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금년도(2,132억 5,300만원)보다 △1,332억 5,300만원 감액한 800억원으로 지출계획 하고, 재해 및 재난발생에 대한 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응급복구(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년도(308억 400만원)보다 △118억 400만원 감액하여 190억원으로 지출계획한 것임,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아울러 예치금은 금년도(5,594억 9,100만원)대비 1,360억 1,300만원 증액한 6,955억 500만원을 지출계획하고, 일반예치금은 5,492억 1,100만원을 지출 계획하고, 의무예치금은 1,462억 8,400만원을 지출 계획하여 제출하였음

〈표 3-58〉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025	202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1,170,215	996,158	174,056	
재난예방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일반운영비	20,000	21,337	△1,337	· 재난예방 사업 지원 20,000
재료비	4,000	7,774	△3,774	· 재난예방 사업 지원 4,000
시설비	80,000	213,253	△133,253	· 코로나19 긴급대응 및 재난예방 사업 지원 80,000
응급복구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사무관리비	1,000	1,000	-	· 재해 및 재난발생에 대한 응급복구 지원 1,000
시설비	19,000	30,804	△11,804	· 재해 및 재난발생에 대한 응급복구 지원 19,000
연구용역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사무관리비	400	-	400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관련 연구용역 수행 400
연구용역비	100	230	△130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관련 연구용역 수행 100
시설비	200	270	△70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관련 연구용역 비용 200
기금관리비				
사무관리비	10	15	△5	·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 10
여유자금 예치				
일반예치금	695,505	559,491	136,013	· 일반예치금 549,211 · 의무예치금 146,284
지방채차입금 이자상환				
지방채증권 원금상환	350,000	-	350,000	· 지방채 원금 상환 350,000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2) 구호계정

- **구호계정**은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재해구호물자의 조달 및 운송,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설치 운영, 자원봉사자 등의 교육 및 급식, 코로나19 대응사업 등을 추진하는 계정으로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신속하게 실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설치·운영하는 계정임

### ① 조성규모

- 동 계정은 '25년도말 1,755억 4,700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24년도말 조성액(1,230억 9,600만원)보다 524억 5,100만원이 증액하는 것으로 제출됨

〈표 3-59〉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액	
123,096	58,620	6,169	52,451	175,547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② 운용계획

- 동 계정의 '25년도 운용계획은 1,817억 1,700만원으로 '24년도 운용규모(1,992억 1,500만원)보다 △174억 9,800만원 감액된 것임
-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가 금년도(1,411억 700만원)보다 △180억 1,100만원 감액된 1,230억 9,6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고, 국고보조의 경우, '24년도에 이어 '25년도에도 수입계획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됨

〈표 3-60〉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181,717	199,215	△17,498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	1,000	-	·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 타 이 자 수 입	5	5	-	· 기타 이자수입
사·도보조금등반환수입	5	5	-	· 자치구 정산금액 반납 등
그 외 수 입	5	5	-	· 시설 정산금액 반납 등
예 치 금 회 수	123,096	141,107	△18,011	· 전년도 이월금
기 타 회 계 전 입 금	57,605	57,093	512	· 일반회계 전입금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지출계획은 금년도(1,992억 1,500만원)보다 △174억 9,800만원 감액된 1,817억 1,700만원으로 계획한 바,
- 지출계획중 **이재민 재해보상**은 금년도(423억 7,900만원)보다 △414억 4,200만원 감액된 9억 3,700만원으로,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은 금년도(239억 5,300만원)보다 △195억 6,000만원 감액한 43억 9,300만원으로 지출계획한 것임

〈표 3-61〉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025	202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181,717	199,215	△17,498	
이 재 민 재 해 보 상					
사무관리비	2	10	△7	·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교육비	10
민간인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335	38,119	△37,784	· 이재민 구호비 예상액	335
자차단체경상보조금	600	1,843	△1,243	· 이재민 재난지원금 예상액	600
의 료 및 구 호 비 지 원					
사무관리비	415	754	△338	· 취약계층 방역물품 등 지원 · 응급구호세트 등 구호물자 구입비 · 전시구호물자 구입비 · 재해구호물자 창고운영경비	180 168 65 1
공공운영비	10	10	-	· 재해구호물자 통신단말기 통신비 · 재해구호물자창고 공공요금	5 4
무 더 위 썬 터 냉 방 비 지 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33	248	△114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노숙인, 쪽방촌무더위쉼터)	133
자차단체경상보조금	4,259	23,557	△19,298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어르신 무더위쉼터)	4,259
여 유 자 금 예 치					
일반예치금	175,547	123,096	52,451	· 여유자금 예치	175,547
반 환 금 및 기 타					
국고보조금반환금	408	536	△128	· 국고사업 반환금	408
기 금 관 리 비 ( 재 난 관 리 기 금 구 호 계 정 )					
사무관리비	5	-	5	·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수당	5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11) 남북교류협력및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 남북교류협력및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47)에 따라 설치되어 남북교류협력 증진과 시민공감대 확산을 통한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하고자 운용되는 기금임

1) 조성규모

- 동 기금의 '25년도말 조성액은 316억 2,700만원이며 '24년도말 조성규모 (322억 7,900만원)보다 △6억 5,200만원이 감소된 것임

〈표 3-62〉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및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액	
32,279	1,284	1,937	△652	31,627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운용계획

- 동 기금은 '25년도에 335억 6,4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24년도 운용규모(344억 900만원)보다 △8억 4,500만원 감액된 것임
-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을 금년도(14억 1,400만원)보다 △1억 2,900만원 감액된 12억 8,400만원을 수입계획하고, 전년도 이월액인 예치금 회수는 금년도(329억 9,500만원)보다 △7억 1,500만원 감액된

47)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조성)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322억 7,900만원을 수입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표 3-63〉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및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33,564	34,409	△845	
공공예금이자수입	1,284	1,414	△129	·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 치 금 회 수	32,279	32,995	△715	· 전년도 이월액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지출계획은 세부사업인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해 금년도(20억 8,000만원)보다 △1억 9,200만원 감액한 18억 8,700만원을 지출계획하고, **여유자금예치**는 금년도(322억 7,900만원)보다 △6억 5,200만원 감액한 316억 2,7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표 3-64〉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및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025	202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33,564	34,409	△845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 사업					
사무관리비	115	366	△2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통일 교육사업 20</li> <li>· 북한인권 증진 및 인식 제고 10</li> <li>·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65</li> <li>·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 심사 수당 등 20</li> </ul>	
행사운영비	250	-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 100</li> <li>· 통일관련 포럼 등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 150</li> </ul>	
민간경상사업보조	1,522	1,600	△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통일 교육사업 352</li> <li>·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 80</li> <li>· 통일인식 및 북한 이해 제고 300</li> <li>·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690</li> <li>· 통일관련 포럼 등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 100</li> </ul>	
여 유 자 금 예 치					
일반예치금	31,627	32,279	△652	· 예치금 31,627	
기 금 관 리 비					
사무관리비	50	50	-	·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개최비용 등 일반운영비 50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12) **지역교류협력기금**

□ **지역교류협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sup>48)</sup>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운용되고 있음

**1) 조성규모**

○ **지역교류협력기금**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25년도말 조성액은 '24년도말 조성액(11억 6,200만원)보다 △4억 2,800만원 감액된 7억 3,4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표 3-65〉 2025년도 지역교류협력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액	
1,162	1,710	2,139	△428	734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② **운용계획**

□ 동 기금의 '25년도 운용계획은 28억 7,300만원으로 '24년도(32억 2,300만원)보다 △3억 4,900만원 감액하여 운용계획된 것임

48)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금년도(8,000만원)보다 1,800만원 증액한 9,8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고, **예치금회수**는 금년도(18억 2,800만원)보다 △6억 6,500만원 감액된 11억 6,2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였으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 **기타회계전입금**은 금년도(13억원)보다 3억원 증액된 16억원으로 수입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표 3-66〉 2025년도 지역교류협력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2,873	3,223	△349	
공공예금이자수입	98	80	18	·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 타 이 자 수 입	0	0	0	· 기타이자 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	3	△1	·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위탁비반환수입	10	11	△1	· 위탁비 반환수입
예치금회수	1,162	1,828	△665	· 전년도 이월액
기타회계전입금	1,600	1,300	300	· 일반회계 전입금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지출계획의 경우, 세부사업인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은 「재해구호법」 49)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지원금을 기탁하여 피해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도와 동일한 10억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출계획하고, 여유자금 예치는 '24년도(11억 6,200만원)보다 △4억 2,800만원 감액한 7억 3,400만원을 지출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49)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4. “구호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나.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다. 그 밖에 구호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표 3-67〉 2025년도 지역교류협력기금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편 성 목	2025	202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2,873	3,223	△349
청 소 년 역 사 문 화 교 류 사 업				
사 무 관 리 비	1	-	1	·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비용 1
민간경상사업보조	350	300	50	· 서울지역 청소년 문화교류 350
타 지 방 자 치 단 체 재 해 · 재 난 구 호 지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	1,000	-	· 타 지자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1,000
타 시 도 연 계 M I C E 공 동 마 케 팅 운 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77	250	27	· 타 시도 연계 MICE 특별지원금 180 · 타 시도 연계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37 · 타 시도 공동마케팅 사업운영비 46 · 기타 대행업무 수수료 등 14
랜 선 나 눔 캠퍼스 운영				
사 무 관 리 비	2	2	-	· 멘토링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등 비용 2
기 타 보 상 금	460	460	-	· 대학생 활동비 46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	10	-	· 지역상생교류 사업 홍보비 10
약 자 와 동 행 하 는 농 촌 힐 링 지 원 사 업				
사 무 관 리 비	14	35	△20	· 버스차량 임차비 14
행 사 운 영 비	20	-	20	· 서울농장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20
여 유 자 금 예 치 ( 국 내 협 력 계 정 )				
일 반 예 치 금	734	1,162	△428	· 여유자금 예치 734
기 금 관 리 비				
사 무 관 리 비	3	3	0	· 위원회 수당 등 3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13) **국제개발협력기금**

- **국제개발협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sup>50)</sup>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운용되고 있음

① **조성규모**

- 동 기금은 '25년도말 15억 900만원을 조성계획한 것으로 '24년도말 조성액(14억 7,200만원)보다 3,600만원 증액된 것임

〈표 3-68〉 2025년도 국제개발협력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 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액	
1,472	4,780	4,743	36	1,509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② **운용계획**

- 동 기금의 '25년도 운용규모는 62억 5,200만원으로 '24년도 운용규모(69억 8,900만원)보다 △7억 3,600만원 감액한 것임
- 수입계획은 금년도로부터 이월되는 예치금회수를 금년도 수입계획액(32억 1,600만원)보다 △17억 4,400만원 감액한 14억 7,2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는 기타회계전입금은 금년도(36억원)보다 9억 6,400만원 증액한 45억 6,4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50)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국제개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표 3-69〉 2025년도 국제개발협력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6,252	6,989	△736	
공공예금이자수입	216	170	46	· 공공예금 이자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	2	△2	· 미편성
예치금회수	1,472	3,216	△1,744	· 전년도 이월금
기타회계전입금	4,564	3,600	964	· 일반회계 전입금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지출계획은 금년도(69억 8,900만원)보다 △7억 3,600만원 감액한 62억 5,200만원을 지출계획한 것으로 세부사업의 경우,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서울도시정책 최고위 과정**(2억 9,000만원), **서울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8억 6,500만원), **서울형 ODA 챌린지 추진**(8억원)등에 지출계획하여 제출하였음

〈표 3-70A〉 2025년도 국제개발협력기금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예 산 과 목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6,252	6,989	△736
서울시립대 도시행정 해외 공무원 석사과정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1	137	3	· 과평당차보수명, 초단시간근로제명, 시간강사 4명보수
사무관리비	276	261	14	· 강의료, 건강검진비, 건강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0	3	△2	· 우편통신비
행사운영비	38	43	△5	· 간담회비, 비교과활동
국내여비	0	0	-	· 국내운영 출장비
외빈초청여비	510	512	△2	· 공항교통비, 기숙사비 및 식비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사무관리비	213	238	△25	· 교육연수 관련 과정 운영경비
행사운영비	75	71	3	· 국제연수전문가포럼및동창생네트워크포럼
외빈초청여비	334	196	137	·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여비
해외 도시철도 관계자 초청 교육 사업				
사무관리비	19	32	△12	· 과정운영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1	0	1	· 행사운영비
외빈초청여비	47	44	2	· 항공료, 식비, 숙박비
개도국 고위공무원 서울도시정책 최고위과정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8	26	1	· 임금, 보험료, 퇴직금 등
사무관리비	117	116	1	· 운영비, 자문비, 강의료 등
공공운영비	0	0	0	· 우편통신비 등
행사운영비	3	1	2	· 회의비, 간담회비 등
국내여비	0	0	0	· 출장여비 등
외빈초청여비	139	119	20	· 다과비, 식비, 생활비 등
서울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250	200	50	· 유학생 박람회 개최
국외업무여비	10	-	10	· 항공료, 숙박료, 식비 등 여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05	400	205	· 유학생 장학 프로그램 운영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표 3-70B〉 2025년도 국제개발협력기금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예 산 과 목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6,252	6,989	
개 도 국 소 방 안 전 인 프 라 구 축				
사 무 관 리 비	6	5	1	· 연수운영 사무관리비 6
외빈초청여비	16	10	6	· 외국공무원 초청 여비 16
민간경상사업보조	130	240	△110	· 소방차량 및 장비 양여 보조사업비 130
서 울 형 O D A 챌 린 지 추 진				
사 무 관 리 비	750	1,400	△650	· 서울형ODA 챌린지 추진 750
국외업무여비	30	40	△10	· 서울ODA챌린지 추진 현지조사 30
외빈초청여비	20	60	△40	· 서울ODA챌린지 추진관련 해외 주요인사 초청 20
민 간 국 제 개 발 협 력 지 원 사 업				
사 무 관 리 비	300	-	300	· 사업수행 300
국외업무여비	21	-	21	· 현지조사,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 참석 21
민간경상사업보조	250	230	20	· 지원사업비 250
외 국 지 방 정 부 재 해 구 호				
국외경상이전	400	400	-	· 외국지방정부 재해구호 400
여 유 자 금 예 치				
일 반 예 치 금	1,509	1,472	36	· 여유자금 예치 1,509
기 금 관 리 비				
사 무 관 리 비	5	5	-	· 위원회 운영비 5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14) 도시재생기금

- 도시재생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51)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자 설치된 기금임
- 동 기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sup>52)</sup>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등을 재원<sup>53)</sup>으로 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도시재생사업지를 대상으로 거점공간 매입 및 주민협의체 추진을 지원하고 있음

### 1) 조성규모

- '25년도말 조성 규모는 675억 8,600만원으로 '24년도말 조성액(374억 1,300만원)보다 301억 7,2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제출하였음

51)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의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52)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3조제4호다목의 복합 건축물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이란 제3조제4호의 업무용시설, 판매용시설 및 복합시설(이하 "업무용시설등"이라 한다)이 아닌 시설에서 업무용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53)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2.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보조금
4. 차입금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친 민간인(단체)의 기부금품
6.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표 3-71〉 2025년도 도시재생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 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액	
37,413	31,279	1,106	30,172	67,586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 운용계획

- 동 기금은 '24년도 운용계획(1,258억 7,500만원)보다 △571억 8,200만원 감액된 686억 9,200만원을 운용계획한 것임
- 수입계획의 경우, **부담금**을 금년도(446억 8,300만원)보다 △183억 3,300만원 감액된 263억 5,0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고, **예치금회수**는 금년도(795억 6,600만원)보다 △421억 5,200만원 감액한 374억 1,300만원을 수입계획한 바,
- 「수도권정비계획법」<sup>54)</sup>에 따라 징수되어 서울시로 배분되는 **과밀부담금**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sup>55)</sup>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sup>56)</sup>에 따라 균형발전특별회계와 도시재생기금에 균등하게 세입조치 되어 **균형발전특별회계**세입예산에 **과밀부담금**(263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도시재생기금**의 수입계획에도 **과밀부담금**(263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sup>57)</sup>

5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부담금의 배분)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귀속한다.

55)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12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로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후략)

56)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후략)

5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24.11. 1) p.300



〈표 3-72〉 2025년도 도시재생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68,692	125,875	△57,182	
공공예금이자수입	3,405	1,607	1,798	· 공공예금이자수입
그 외 수 입	1,523	19	1,504	· 과년도 반납정산금
부 담 금	26,350	44,683	△18,333	· 과밀부담금
예 치 금 회 수	37,413	79,566	△42,152	· 예치금회수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지출계획의 경우,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은 금년도(884억 5,100만원)대비 △873억 5,500만원 감액한 10억 9,600만원을 지출계획하고, **예치금**은 '24년도(374억 1,300만원)대비 301억 7,200만원 증액한 675억 8,600만원을 지출계획하여 제출하였음

〈표 3-73〉 2025년도 도시재생기금 주요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68,692	125,875	△57,182	
도 시 재 생 기 반 시 설 조 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96	-	1,096	· 다동공원 조성사업 보상업무 대행 수수료 1,096
기 금 관 리 비				
사무관리비	10	10	-	· 심의수당 등 10
여 유 자 금 예 치				
일반예치금	67,586	37,413	30,172	· 여유자금 예치 67,586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15) **관광진흥기금**

- **관광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58)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위기 시 관광업계를 지원하는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과 서울관광플라자 건물 개관을 위한 비용을 적립하는 **서울관광플라자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음

**1)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① **조성규모**

-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은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로 인한 서울관광 위기 도래시 관광업계에 대한 긴급 지원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계정으로
  - '25년도말 12억 1,800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24년도말 조성액(17억 9,400만원)보다 △5억 7,600만원 감액된 것임

〈표 3-74〉 2025년도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액	
1,794	68	645	△576	1,218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8)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 관광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운용계획

- 동 계정은 '25년도에는 18억 6,3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24년도 운용 규모(23억 400만원)보다 △4억 4,100만원이 감액된 것임
- 수입계획의 경우, **예치금회수**를 금년도(12억 5,600만원)보다 5억 3,800만원 증액한 17억 9,4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고, **기타회계전입금**의 경우 '24년도에는 1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5년도에는 미편성하였음

〈표 3-75〉 2025년도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1,863	2,304	△441	
공공예금이자수입	68	48	19	· 공공예금이자수입
예 치 금 회 수	1,794	1,256	538	· 전년도 기금계좌 예치금 회수액
기 타 회 계 전 입 금	-	1,000	△1,000	· 미편성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지출계획의 경우, 세부사업인 **이벤트연계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은 '24년도 (5억원) 보다 △2억원 감액 편성된 3억원을 지출계획하고, **마이스 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태조사**는 '25년도 1억 5,000만원을 지출계획 하였으며, **FIT 맞춤형 스마트 숙박시설 구축 지원**은 '25년도 1억 9,000만원을 지출계획하여 제출하였음

〈표 3-76〉 2025년도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025	202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1,863	2,304	△441	
이벤트연계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0	500	△200	· 서울페스타 관광상품화 지원 150 · 바비큐페스티벌 관광상품화 지원 150
마이스 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태조사				
공기관당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50	-	150	· 서울시마이스산업살생사업 경쟁력 강화 분석 100 · 서울시마이스행사모태링및지원에따른 효과분석 50
FIT 맞춤형 스마트 숙박시설 구축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90	-	190	· 다철 기반 잡채시스템 도입 지원 170 · 산정위원회 운영 및 다철 서비스 전환교육 16 · 기존 호텔 서비스 개선방안 전문가 컨설팅 추진 4
여유자금 예치				
일반예치금	1,218	1,794	△576	· 여유자금 예치 1,218
기금 관리비				
사무관리비	5	10	△5	· 기금 관리비 5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2) 서울관광플라자계정

-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은 서울관광플라자 건물 개관을 위한 대규모 예산수요에 대비하여 연차별로 재원을 적립하고자 운용되는 것임

### ① 조성규모

- 동 계정의 '25년도말 조성액은 59억 300만원으로 '24년도말 조성액(56억 7,400만원)보다 2억 2,900만원 증액된 것임

〈표 3-77〉 2025년도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플라자계정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액	
5,674	229	-	229	5,903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② 운용계획

- 동 계정의 '25년도 운용규모는 9억 300만원으로 '24년도 운용규모(6억 7,400만원)보다 2억 2,900만원 증액하여 운용계획한 것임

- 동 계정의 '25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100만원과 예치금회수 6억 7,400만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예탁한 예탁금의 이자수입인 예탁금이자수입 2억 800만원을 수입계획한 것임

〈표 3-78〉 2025년도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플라자계정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903	674	229	
공공예금이자수입	21	12	8	·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674	441	233	· 전년도 예치금 회수
예탁금이자수입	208	221	△12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동 계정의 '25년도 지출계획은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적립금인 예치금을 금년도(6억 7,400만원)보다 2억 2,900만원 증액한 9억 300만원으로 지출계획 하였음

〈표 3-79〉 2025년도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플라자계정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903	674	229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적립금				
일반예치금	903	674	229	· 여유자금 예치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의 경우, 지난 '20년 관련 조례<sup>59)</sup> 제정 당시에는 '21년부터 '24년까지 매년 250억원씩 총 1,000억원을 적립하여 '25년도에 서울관광플라자 건물매입비를 확보하여 관광플라자 조성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59)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20.10.15 시행)

- 적립 첫해인 '21년도에도 당초 목표인 25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을 포함한 50억 6,000만원을 적립하였고, '22년도 부터 '25년까지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일부 이자수입만 적립되는 상태로 확인되는 바,

〈표 3-80〉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플라자계정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합계
누적 적립금 <sup>주 1)</sup>	147	232	233	229	841
전입금 <sup>주 2)</sup>	0	0	0	0	0
보조금	0	0	0	0	0
차입금	0	0	0	0	0
용자금회수	0	0	0	0	0
예수금	0	0	0	0	0
이자수입	147	232	233	229	841
기타수입	0	0	0	0	0

주1) 서울관광플라자 관련 누적 적립금

주2) 일반회계 전입금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적립성 기금'으로서 매년 적립금액이 과소한 경우 기금 존속을 재검토할 것으로 정하고 있어<sup>60)</sup> 최근 4년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전무하여 매년 이자수입만 적립되고 있는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의 존속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0) ■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287

○ '적립성 기금'으로서 매년 적립금액이 과소한 경우 기금 존속 재검토

■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335

마. 지방기금의 분류

□ 설치목적에 따른 분류

③ 적립성기금

○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원금을 이식하는 등 자금을 적립하는 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주차시설확충기금, 청사건립기금 등)

## (16) 공무원주거안정기금

-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61)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운용되고 있음

### 1) 조성규모

- 동 기금의 '25년도말 조성액은 64억 9,400만원으로 '24년도말 조성규모(56억 3,000만원)보다 8억 6,400만원 증가된 것임

〈표 3-81〉 2025년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액	
5,630	22,871	22,007	864	6,494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 운용계획

- 동 기금의 '25년도 운용규모는 285억 100만원으로 금년도 운용규모(236억 3,700만원)보다 48억 6,400만원 증액하여 계획된 것임
-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인 **기타회계전입금** 94억원, '25년도 만기 도래하는 공무원 주택전세금 용자금 회수인 **민간용자금회수수입** 127억 6,800만원, **예치금회수** 56억 3,000만원 등으로 수입계획한 것임

61)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표 3-82〉 2025년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28,501	23,637	4,864	
공공예금이자수입	114	111	2	· 공공예금 발생이자 수입
융자금회수이자수입	589	416	172	·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2,768	11,337	1,431	·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회수	5,630	4,172	1,458	· 예치금 회수
기타회계전입금	9,400	7,600	1,800	· 일반회계 전입금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지출계획중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은 서울시 공무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전세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으로<sup>62)</sup> '25년도에는 운용규모는 220억원으로 금년도 운용규모(180억원)보다 40억원 증액 편성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등으로 지출되는 **기금관리비**는 700만원으로 '24년도(700만원) 운용규모와 동일하고, **예치금**은 64억 9,400만원을 지출계획한 것임

〈표 3-83〉 2025년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28,501	23,637	4,864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				
민간융자금	22,000	18,000	4,000	·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 22,000
기금관리비				
사무관리비	7	7	-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7
예치금				
일반예치금	6,494	5,630	864	· 예치금 6,494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62)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

- 융자대상 : 서울시 무주택 공무원, 금리 : 1%(보증보험 0.2%별도), 한도 : 1억원(2년거치 최장6년)

(17) 하수도사업회전기금

- 하수도사업회전기금은 「지방공기업법」 제39조<sup>63)</sup>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sup>64)</sup>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중장기 대규모 하수도사업의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운용되고 있음

1) 조성규모

- 동 기금은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주요 대규모 하수도 사업에 대해 시기별 필요한 하수도 사업의 자금을 지원 하고자 조성된 것으로 '25년도에는 '24년도말 조성액(915억 3,200만원)보다 30억원 증가한 945억 3,2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임

〈표 3-84〉 2025년도 하수도사업회전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2024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액	
91,532	3,000	-	3,000	94,532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3) 「지방공기업법」 제39조(회전기금)

- ① 지방직영기업은 사업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회전기금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한다.
- ③ 제1항의 회전기금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64)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회전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회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2) 운용계획

□ 동 기금은 '25년도에 945억 3,200만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제출한 바,

- 수입 계획의 경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금년도(27억원)보다 3억원 증액편성한 30억원으로 수입계획하고, **예치금 회수**는 금년도(732억 3,100만원)보다 183억 100만원 증액한 915억 3,200만원을 수입계획하였으며 '24년도에 편성되었던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156억 100만원)은 '25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표 3-85〉 2025년도 하수도사업회전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94,532	91,532	3,000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	2,700	300	· 예치금 원금에 대한 '25년 예금이자(예정)수입
예 치 금 회 수	91,532	73,231	18,301	· '24년 예치금 회수금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	15,601	△15,601	· 미편성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지출계획의 경우, 945억 3,200만원을 지출계획하는 것으로 지출계획액 전액을 시금고에 예치하는 예치금으로 지출계획한 것으로 확인됨

〈표 3-86〉 2025년도 하수도사업회전기금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예 산 과 목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94,532	91,532	3,000	
예 치 금					
일 반 예 치 금	94,532	91,532	3,000	· 정기예금 등 자금운용	94,532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18) 고향사랑기금

- 고향사랑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sup>65)</sup>,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임

### 1) 조성규모

- 동 기금의 '25년도말 조성액은 8억 2,700만원으로 '24년도말 조성규모(5억 9,800만원)보다 2억 2,800만원 증액된 것임

〈표 3-87〉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액	
598	381	152	228	827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 운용계획

- 동 기금의 '25년도 운용규모는 9억 7,900만원으로 금년도 운용규모(6억 3,800만원)보다 3억 4,100만원 증액하여 운용계획된 것임

6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고향사랑기부금의 설치 등)

-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금년도 운용규모(1,000만원)보다 700만원 증액되어 1,8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인 기부금수입은 금년도(3억 3,000만원)보다 3,300만원 증액된 3억 6,300만원으로 수입계획 하였으며, **예치금회수**는 금년도(2억 9,700만원)보다 3억원 증액하여 5억 9,800만원으로 수입계획한 것임

〈표 3-88〉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979	638	341	
공공예금이자수입	18	10	7	·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기 부 금 수 입	363	330	33	· 고향사랑기부금
예 치 금 회 수	598	297	300	· 예치금 회수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25년도 지출계획은 **여유자금예치**(8억 2,700만원)와 일반보전금(1억 800만원)으로 지출계획한 것으로
  - '24년도에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구입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였으나, '25년도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기금에서 답례품을 구입하여 지출하고자 일반보전금 1억 800만원을 신규편성한 것임

〈표 3-89〉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예 산 과 목	2025	202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979	638	341	
고 향 사 랑 기 부 제 운 영					
사무관리비	33	30	3	· 여유자금 예치금	33
기타보상금	108	-	108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	108
여 유 자 금 예 치					
일반예치금	827	598	228	· 여유자금 예치금	827
기 금 관 리 비					
사무관리비	11	9	1	· 위원회 운영수당	6
				· 사무용품잡비	4
				· 답례품 배송비	1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19) 공공시설등설치기금

-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sup>66)</sup>,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5년도부터 운용되는 기금임

1) 조성규모

- 동 기금의 '25년도말 조성액은 237억 4,000만원으로 운용계획한 것임

〈표 3-90〉 2025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 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액	
-	23,740	-	23,740	23,740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운용계획

- 동 기금의 '25년도 운용규모는 237억 4,000만원이며 수입계획은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237억 4,000만원을 그외수입으로 수입계획한 것임
  - '25년도 수입계획은 봉래동2가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비용중 1회차 216억원과 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공기여 비용 107억원을 5년간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확인됨<sup>67)</sup>

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거나 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6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12150('24.10.22) “2024년도 제2차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표 3-91〉 2025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23,740	-	23,740	
세 외 수 입	23,740	-	23,740	
임시적세외수입	23,740	-	23,740	
기 타 수 입	23,740	-	23,740	
그 외 수 입	23,740	-	23,740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23,740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25년도 지출계획은 공공기여비용 237억 4,000만원 전액을 예치하는 것으로 지출계획한 것임

〈표 3-92〉 2025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5	2 0 2 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편 성 목				
합 계	23,740	0	23,740	
여유자금 예치(공공시설등 설치기금/도시계획과)				
일 반 예 치 금	23,740	0	23,740	· 공공기여 비용 예치 23,740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20) **박물관·미술관 소장품구입기금**

- **박물관·미술관 소장품구입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5년도부터 운용되는 기금으로 시립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운용하는 기금임

**1) 조성규모**

- 동 기금의 '25년도말 조성액은 6,300만원을 조성계획한 것으로 '24년도말 조성액(5,100만원)보다 1,200만원 증액된 것임

〈표 3-93〉 2025년도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액	
51	1,020	1,008	12	63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동 기금은 기금운용 5년차인 '28년도까지 500억원으로 조성규모를 설정하고 연도별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나<sup>68)</sup> 2차년도인 '25년도 목표 조성계획액(88억원)대비 실제 조성계획액(6,300만원)이 △87억 3,700만원 감액 계획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sup>69)</sup>
- 현재 서울시가 직면한 세입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기금의 연간 조성계획을 수립한 결과일 수 있어 기금운용계획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간 조성 규모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68) 서울특별시, 박물관과-24200('22. 7.15)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 조성계획”

69) 서울특별시, 박물관과-10971('24.10.22) “2024년 제1차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표 3-94〉 연도별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 조성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50,000	22,400	8,800	8,100	6,300	4,400
전입금	전입금	46,800	22,300	8,300	7,400	5,400	3,400
자체 재원	기부금	1,450	50	200	300	400	500
	기금운용수입	1,750	50	300	400	500	50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박물관과-24200 ('22. 7.15)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 조성 계획”

## 2) 운용계획

- 동 기금의 '25년도 운용규모는 10억 7,1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 예치금회수 5,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인 기타회계전입금 10억원으로 계획한 것임

〈표 3-95〉 2025년도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25	2024	증감액	주요산출내역
합계	1,071	2,051	△979	
공공예금이자수입	20	1	19	·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	50	△50	· 미편성
예치금회수	51	-	51	· 24년도 예치금 회수금
기타회계전입금	1,000	2,000	△1,000	· 일반회계 전입금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25년도 지출계획은 5개 시립기관<sup>70)</sup>의 소장품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지원** 사업의 자산취득비 9억 4,200만원, **여유자금 예치** 6,300만원, **기금관리비** 800만원을 지출계획한 것임

70)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공예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우리소리박물관

〈표 3-96〉 2025년도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025	2024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1,071	2,051	△979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지원				
사무관리비	57	62	△4	· 소장품 구입관리를 위한 각종 위원회 운영 등 부대경비 57
자산및물품취득비	942	1,927	△985	· 시립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지원 942
여 유 자 금 예 치				
일반예치금	63	51	12	· 여유자금 예치 63
기 금 관 리 비				
사무관리비	8	10	△2	· 기금운용심의회위원회 참석수당 등 8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구성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토론요지 : 「생략」

## VI.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 2.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

#### 1) 소위원회 구성

- 일 자 : 2024. 12. 4(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위원구성 :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11명)
  - 위 원 장 : 최민규(도시안전건설)
  - 부위원장 : 김경훈(교육), 정준호(교통)
  - 위 원 : 서호연(행정자치), 홍국표(기획경제),  
이용균(환경수자원), 아이수루(문화체육관광),  
도문열(보건복지), 봉양순(도시안전건설),  
김종길(주택공간), 김원태(도시계획균형)

## 2) 소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2024. 12. 5(목) 14:00 ~ 17: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기금운용계획안 등 조정 소위원회 간담회(운영원칙 등)

### ○ 제2차 소위원회

- 일 시 : 2024. 12. 6(금) 16:00 ~ 18: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기금운용계획안 등 조정 소위원회 운영 간담회

### ○ 제3차 소위원회

- 일 시 : 2024. 12. 9(월) 15:00 ~ 17: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기금운용계획안 등 조정 소위원회 운영 간담회

### ○ 제4차 소위원회

- 일 시 : 2024. 12. 12(목) 10:00 ~ 23: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기금운용계획안 등 조정 소위원회 운영 간담회(수정안 마련)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의결

- 일 시 : 2024. 12. 13(금) 10:30 (제4차 예결특위)
- 발 의 자 : 최민규 위원장
-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기타내용 : 서울특별시 각 사업부서는 의결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부대의결 등)를 준수할 것

### VII. 수정안의 요지 : 「생략」

### VIII. 부대의결 : 「생략」

### IX. 심사결과 : 수정가결(2024. 12. 13.)

◇ 첨 부 :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298
----------	------------

2024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I. 수정이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으로부터 기금전입규모를 조정하여 가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다.

## II. 수정 주요 골자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한다.

◇ 첨부 :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의결내역 1부.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 □ 총 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당초 운용계획안	조 정 내 역			수정 운용계획안
		소 계	증 액	감 액	
계	4,414,245,304	△235,331,482	11,723,892	△247,055,374	4,178,913,82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	1,604,359,099	△35,331,482	-	△35,331,482	1,569,027,61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	547,467,545	-	11,526,992	△11,526,992	547,467,545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	294,420,084	-	-	-	294,420,084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	85,192,073	-	-	-	85,192,073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	40,610,736	-	-	-	40,610,736
식품진흥기금	18,231,393	-	-	-	18,231,393
기후대응기금	50,146,711	-	-	-	50,146,711
도로굴착복구기금	63,901,272	-	-	-	63,901,272
양성평등가족기금	2,088,024	-	-	-	2,088,024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	43,715,827	-	-	-	43,715,827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	1,026,596	-	-	-	1,026,596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	7,602,755	-	-	-	7,602,755



기 금 명	당초 운용계획안	조 정 내 역			수정 운용계획안
		소 계	증 액	감 액	
사 회 복 지 기 금 자 활 계	5,249,567	-	-	-	5,249,567
사 회 복 지 기 금 주 거 지 원 계	21,034,273	-	-	-	21,034,273
체 육 진 흥 기 금	14,290,664	-	-	-	14,290,664
재 난 관 리 기 금 재 난 계	1,170,215,228	△200,000,000	-	△200,000,000	970,215,228
재 난 관 리 기 금 구 호 계	181,717,118	-	-	-	181,717,118
남 북 교 류 협 력 및 평 화 통 일 기 반 조 성 기 금	33,564,143	-	-	-	33,564,143
지 역 교 류 협 력 기 금	2,873,441	-	-	-	2,873,441
국 제 개 발 협 력 기 금	6,252,894	-	196,900	△196,900	6,252,894
도 시 재 생 기 금	68,692,849	-	-	-	68,692,849
관 광 진 흥 기 금 서 울 관 광 기 금 지 원 계 정	1,863,236	-	-	-	1,863,236
관 광 진 흥 기 금 서 울 관 광 플 라 자 계 정	903,832	-	-	-	903,832
공 무 원 주 거 안 정 기 금	28,501,895	-	-	-	28,501,895
하 수 도 사 업 회 전 기 금	94,532,841	-	-	-	94,532,841
고 향 사 랑 기 금	979,998	-	-	-	979,998
공 공 시 설 등 설 치 기 금	23,740,000	-	-	-	23,740,000
박 물 관 · 미 술 관 소 장 품 구 입 기 금	1,071,210	-	-	-	1,071,210

## □ 세부 수정내역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과목		제출안	수정안	증감	수정내역
장관항	목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604,359,099	1,569,027,617	△35,331,48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85,222,305	1,549,890,823	△35,331,482	
내부거래		1,441,186,384	1,405,854,902	△35,331,482	
예탁금및예수금		1,441,186,384	1,405,854,902	△35,331,482	
(722-01) 예수금수입		1,368,431,855	1,332,988,699	△35,443,1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수금 수입</li> <li>·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 238,400,000 → 236,000,000 (△2,400,000)</li> <li>·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419,200,000 → 416,300,000 (△2,900,000)</li> <li>·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계정 226,900,000 → 227,300,000 (400,000)</li> <li>· 도시개발특별회계 387,300,000 → 359,400,000 (△27,900,000)</li> <li>· 균형발전특별회계 61,000,000 → 60,800,000 (△200,000)</li> <li>· 소방특별회계 소방정책사업비계정 7,000,000 → 4,556,844 (△2,443,156)</li> </ul>
(722-04) 예탁금이자수입		58,784,529	58,896,203	111,6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탁금 이자 수입 58,784,529 → 58,896,203 (111,674)</li> </ul>

####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과목			제출안	수정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604,359,099	1,569,027,617	△35,331,482	
재무활동(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1,604,352,099	1,569,020,617	△35,331,482	
내부거래지출(통합계정)			1,422,754,314	1,468,954,314	46,200,000	
기금 및 회계 용자 지원			1,422,754,314	1,468,954,314	46,2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04-01) 예탁금</li> <li>○ 기금 및 회계 용자 지원 1,190,600,000 → 1,237,200,000 (46,600,000)</li> </ul>

과 목			제 출 안	수 정 안	증 감	수 정 내 역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 부 사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494,000,000 → 534,500,000 (40,500,000)</li> <li>·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6,000,000 → 62,700,000 (△3,300,000)</li> <li>·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389,200,000 → 400,000,000 (10,800,000)</li> <li>·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계정 241,400,000 → 240,000,000 (△1,400,000)</li> </ul> (705-02) 예수금이자상환 ○ 예수금 이자 상환 71,681,524 → 71,281,524 (△400,000)
		보전지출(통합계정)(통합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81,597,785	100,066,303	△81,531,482	
		여유자금 예치	181,597,785	100,066,303	△81,531,482	(602-01) 일반예치금 ○ 여유자금 예치 181,597,785 → 100,066,303 (△81,531,482)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 수입계획 : 수정사항 없음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과 목			제 출 안	수 정 안	증 감	수 정 내 역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 부 사 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47,467,545	547,467,545	-	
		재무활동	547,236,195	547,236,195	-	
		보전지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47,236,195	547,236,195	-	
		여유자금 예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18,519	570,195	351,676	(602-01) 일반예치금 ○ 차년도 이월금 218,519 → 570,195 (351,676)

과 목			제 출 안	수 정 안	증 감	수 정 내 역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 부 사 업				
		지방채 차입금 원금 상환	403,570,684	414,746,000	11,175,316	(601-04) 지방채증권원금상환 ○ 지방채 발행 차입금 원금 상환 403,570,684 → 414,746,000 (11,175,316)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143,446,992	131,920,000	△11,526,992	(311-04) 지방채증권이자상환 ○ 지방채 발행 차입금 이자 상환 143,446,992 → 131,920,000 (△11,526,992)

##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과 목			제 출 안	수 정 안	증 감	수 정 내 역
장 관	항 목	목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1,170,215,228	970,215,228	△200,000,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39,915,228	939,915,228	△200,000,000	
		내부거래	580,423,779	380,423,779	△200,000,000	
		전입금	580,423,779	380,423,779	△200,000,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580,423,779	380,423,779	△200,000,000	○ 일반회계 전입금 580,423,779 → 380,423,779 (△200,000,000) · 지방채 원금 상환 350,000,000 → 150,000,000 (△200,000,000)

###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과 목			제 출 안	수 정 안	증 감	수 정 내 역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 부 사 업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1,170,215,228	970,215,228	△200,000,000	
		재무활동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	1,045,505,228	845,505,228	△200,000,000	
		보전지출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1,045,505,228	845,505,228	△200,000,000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	350,000,000	150,000,000	△200,000,000	(601-04) 지방채원금상환 ○ 지방채 원금 상환 350,000,000 → 150,000,000 (△200,000,000)

○ 국제개발협력기금

- 수입계획 : 수정사항 없음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과 목			제 출 안	수 정 안	증 감	수 정 내 역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 부 사 업				
국 제 개 발 협 력 기 금			6,252,894	6,252,894	-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4,738,734	4,541,834	△196,900	
		외국지방정부 공무원교육 및 연수(국제개발협력기금)	2,815,234	2,618,334	△196,900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623,422	426,522	△196,900	(201-01) 사무관리비 ○ 교육연수 관련 과정 운영경비 213,720 → 181,942 (△31,778) (201-03) 행사운영비 ○ 국제연수 전문가 포럼 및 동창생 네트워크 개최 75,002 → 46,790 (△28,212) (301-09) 외빈초청여비 ○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여비 334,700 → 197,790 (△136,910)
재무활동(글로벌도시정책관 국제협력담당관)			1,509,160	1,706,060	196,900	
		보전지출(국제개발협력기금)	1,509,160	1,706,060	196,900	
		여유자금예치	1,509,160	1,706,060	196,900	(602-01) 일반예치금 ○ 여유자금 예치 1,509,160 → 1,706,060 (196,900)